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의 경제적인 효과 및 법령개정 방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진

연구책임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진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창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백승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보조원

목 차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Ⅱ. 이론적 검토

1. 재정보조금 제도 ······ 10
2. 지방교부세 제도 ······ 15
3.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 수요 산정방식 ······ 18
4. 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 ······ 22

Ⅲ. 관련 사례

1. 국내 사례 ······ 33
2. 해외 사례 : 프랑스 지역문화 분권 ······ 46
3. 시사점 ······ 52

Ⅳ.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경제적효과

1. 모형체계 ······ 55
2. 문화시설 도입 및 확충 필요성 ······ 75
3. 문화부문의 주민행복 기여 분석 ······ 82
4. 문화균형특별교부세 효과 ······ 88

Ⅴ. 법령개정방안

1. 현 법령 검토 ······ 97
2.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으로 인한 법령개정방안 ······ 112

3.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문체부 훈령 전문(안) ······ 126

Ⅵ. 결론

1.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활용 절차 ······ 130
2.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 한계 ······ 141

[참고문헌] ······ 147

표목차

<표 Ⅱ-1> 보조금 유형의 세부 분류 ··· 11
<표 Ⅱ-2> 보조금 유형별 재정효과 특성 ··· 12
<표 Ⅱ-3>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 13
<표 Ⅱ-4> 지방재정조정 재원별 정책적 특성 ··· 15
<표 Ⅱ-5> 지방교부세의 운영 개요 ··· 17
<표 Ⅱ-6> 지역균형수요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 20
<표 Ⅱ-7> 측정항목별 지역균형수요 보정방식과 특성 ··· 21
<표 Ⅱ-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18.2.28)에 따른 변경 사항 ··· 23
<표 Ⅱ-9> 균특회계 구성 ··· 25
<표 Ⅱ-10>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 26
<표 Ⅱ-11>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5개 지역 개발사업 지원 체계 ··· 30

<표 Ⅲ-1>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현황 ··· 33
<표 Ⅲ-2>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별 투자현황 ··· 38
<표 Ⅲ-3> 안전분야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별 투자현황 ··· 39
<표 Ⅲ-4> 분권교부세의 보조금적 특성 ··· 41
<표 Ⅲ-5> 2006년 분권교부세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 43
<표 Ⅲ-6>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체계 변화 내용 ··· 44
<표 Ⅲ-7> 프랑스 지방정부의 문화업무 관련 권한 ··· 49

<표 Ⅳ-1> 기초자료 구성 내용 ··· 58
<표 Ⅳ-2> 분석자료 기초분석 ··· 59
<표 Ⅳ-3>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61
<표 Ⅳ-4> 문화시설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도 ··· 62
<표 Ⅳ-5> 삶의 질 지표체계의 구성 ··· 63
<표 Ⅳ-6 > 부문별/생활권별 삶의 질 수준 ··· 66
<표 Ⅳ-4> 확장된 사회계정행렬 구조 ··· 70
<표 Ⅳ-8> 이용자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결과 ··· 77
<표 Ⅳ-9> 변수별 한계효과 결과 ··· 79
<표 Ⅳ-10> 변수별 확률의 예측값 ··· 81
<표 Ⅳ-11> 삶의 질 객관적 지표별 격차분석 결과 ··· 83
<표 Ⅳ-12>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결과 ··· 84
<표 Ⅳ-13> 변수별 한계효과 결과 및 순위 ··· 86
<표 Ⅳ-14> 국가 사회계정행렬 ··· 89

<표 Ⅳ-15> 문화균형특별교부세 시나리오 ……… 90
<표 Ⅳ-16> 연산일반균형모형 분석결과 ……… 90
<표 Ⅳ-17> 소비세 증감 분석결과(시나리오 1, 2) ……… 91
<표 Ⅳ-18> 정부지원금 증감 분석결과(시나리오 3, 4) ……… 92
<표 Ⅳ-19> 자본확충 지원 증감 분석결과(시나리오 5, 6) ……… 93

<표 Ⅴ-1> (가칭)문화균형교부세 제ㆍ개정 근거 ……… 113
<표 Ⅴ-2> 필요성 및 도입 근거 항목 ……… 114
<표 Ⅴ-3> 교부기준 ……… 115
<표 Ⅴ-4> 평가 및 관리 기관 항목 ……… 117
<표 Ⅴ-5> 역할 및 활용 근거 항목 ……… 117
<표 Ⅴ-6> 시설 지원 및 산업 연계 항목 ……… 119
<표 Ⅴ-7> 배분 기준 항목 ……… 119
<표 Ⅴ-8> 재원 항목 ……… 120
<표 Ⅴ-9> 지방교부세법 제ㆍ개정(안) ……… 120
<표 Ⅴ-1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ㆍ개정(안) ……… 121
<표 Ⅴ-11>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법 제정 ……… 123

<표 Ⅵ-1> 특별교부세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 144

그림목차

<그림 Ⅰ-1>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 검토 분석 체계 ······ 8

<그림 Ⅱ-1>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보조금 유형의 개괄 ······ 10
<그림 Ⅱ-2>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 19

<그림 Ⅲ-1>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 34
<그림 Ⅲ-2> 안전분야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 34
<그림 Ⅲ-3> 소방정책 사업비 규모변화 ······ 35
<그림 Ⅲ-4> 도로교통 사고 및 풍수해 관련 투자현황 ······ 36

<그림 Ⅳ-1>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의 사전적 분석 과정 ······ 56
<그림 Ⅳ-2>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분포 ······ 60
<그림 Ⅳ-3> 행복도 종합 ······ 67
<그림 Ⅳ-4> 문화여가 행복도 ······ 68
<그림 Ⅳ-5> CGE 구조 ······ 71
<그림 Ⅳ-6> 정부투자에 의한 지역경제 순환 ······ 89
<그림 Ⅳ-7>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에 따른 영향관계 분석결과 ······ 95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최근 급변하는 인구변화 문제는 인구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것 외에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정책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지방분권 시대에 직면

-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2050년 역삼각형 모양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
  - · 전체 평균 수명은 1960년 60세, 1980년대 말 70세, 2007년 79.6세,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따라서,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변화는 (–)성장을 장기적으로 유발할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역별로 문화향유시설에 대한 공급격차가 존재하여 이를 자발적인 시설공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효용을 지역별로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
  - · 반면, 지역의 제한된 재정력을 현안 및 중점 과제와 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공공재 특성을 갖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실정
-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외에 중앙에서의 시설 공급을 통한 보조를 통해 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

❍ 포괄 보조금을 통해 부처의 사전개입 최소화와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음

- 반면, 지자체의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대안 부족, 전문성 확보 미비, 컨텐츠 부족 등으로 중앙의 지원 없이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실정
- 더불어, 국고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문화시설의 운영미숙은 지자체 및 중앙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음
- 따라서,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중앙의 지원책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

- 더불어, 지방세 비율확대를 통한 재정분권화가 추진 중이며, 균형발전 토대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의 정비가 추진 중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총량이 확대되고 있음
  - (이전재원 조정)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취하여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함
  -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소득세 확충을 통한 재원 확충을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여 재정분권을 위한 세입확충 계획 조성
  - (1단계) 세입확충(+19.5조원, 8:2 ⇨ 7:3)
    - ·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11%에서 20%로 확대함
    - · (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에서 20%로 확대하며 확충분의 40%는 시·도 공동세, 10%는 지역발전펀드로 운용함
    - · (지방교부세) 내국세 19.24%에서 21.24%로 확대함

행정안전부 재정분권 1단계 추진계획

구 분	재정확충
합 계	19.5조원
①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 11%→20%)	6.4조원
② 지방소득세 확대(소득세·법인세의 10% 규모 이양)	13.1조원
③ 지방교부세율 인상(19.24%→21.24%)	–

  - (2단계) 세입확충(+65.9조원, 8:2 ⇨ 7:3 ⇨ 6:4)
    - ·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35%까지 확대함

· (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25%까지 확대함

· 지역자원시설세 및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주세 지방이양 등 추진함

행정안전부 재정분권 2단계 추진계획

구 분	재정확충
합 계	65.9조원
①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 11%→35%)	17조원
② 지방소득세 확대(소득세·법인세의 25% 규모 이양)	30조원
③ 지방교부세율 인상(19.24%→21.24%)	3.8조원
④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조정(개별소비세 일부)	0.8조
⑤ 주행분 자동차세 개편(정액보전금 1조→2조)	1조
⑥ 지역성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 이양	2조
⑦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1.2조
⑧ 주세 등 지방이양(주세, 교육세, 환경부담금, 종부세)	10.1조

❍ 분권교부세 운영 한계 인식과 새로운 국고보조에 대한 당위성 발현

-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전재원
- 2005년 도입되어 2010년 이후에 폐지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4년까지 연장 운영됨
-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비용 보전적 성격의 이전재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보존함
- 분권교부세 폐지 이후 시도, 시군구 집단내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더불어 군의 사회복지예산 불평등도가 높아짐

❍ 분권교부세 폐지 사례와 같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확충은 1인당 사회복지비의 지역간 불평등도를 확대함

-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용도가 정해 지지 않기 때문에 재정자율성이 낮은 군의 경우 지역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복지분야에

쓰기 보다는 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도로, 시설, 건설 등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음

- ❍ 따라서, 지방분권을 대비하여 지역간 문화 불평등도를 완화할 용도로 지정된 특정재원의 필요성이 요구됨
  - −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현실
  - − 따라서, 배분 및 배분을 위한 산식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법에 의해 확정된 총액하에서 문화시설을 소관부처에서 점검하여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
- ❍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에 대한 사전적인 효과 분석틀 제고 필요
  - − 공공문화시설 공급을 중앙에서 보조했을 경우의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근거가 미비되어 지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 효과를 제시하는 방안 필요
  - − 특히, 신규 특별교부세 신설의 영향정도에 대한 고려만이 이루어질 뿐 실질적으로 유발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
  - − 이를 토대로 신규 특별교부세의 신설 효과 및 이에 대응한 법률개정의 토대구축 필요

2) 연구의 목적

- ❍ 지역수요 · 자율권을 존중하되, 균형적 · 발전적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조정세원을 활용한 문화분야 교부세 확보의 준거틀 제시
-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 모든 정책에 대한 결과를 시장청산 기준에 입각하여 정부, 가계, 기업의 측면에서의 일반균형 해로 도출
  - − 지역경제성장변화 정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변화가 국민의 효용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후생경제 측면에서 제시
  -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를 고려한 운영방안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경제적인 효과측면을 고려함으로써 해당 정책 변화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12-2016 (또는 2013년 연장표, 2016년)

- 기본적인 시점은 분석 모형별로 설정하고 파급효과 산출의 기준년도는 해당연도로 제한
- 한국은행 지역표가 13년기준으로 작성되어 정책효과분석을 위해서는 13년 기준으로 전환하여 사용
- 또는 17년으로 환가하여 적용
- 반면, 효과의 산출값은 기준년도와 상관없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형식준수를 위해 최근년도를 적용하는 방법과 효과의 정확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준년도(13년)으로 적용하는 방법 고려

❍ 공간적 범위 : 기본적으로 16개 시도(세종 제외)를 고려

- 16개 시도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며, 정책 특성에 따른 지역 유형화 적용
- 13년 자료 활용시 세종은 기존 지역에 포함하는 것 고려
- 정책별 및 파급효과의 대상 변화에 따른 대상지역 설정

· 시설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기존의 생활권 정책 범위를 설정하여 적용

2) 연구방법

❍ 기본 연구방법

- 문헌조사

· 특별교부세 의의 및 운용체계에 대한 사전 조사

· 유사사례의 운용체계 제시

- 정량분석
  - · 문화시설 도입 및 프로그램 확충 필요성 분석
  - · 문화부문의 주민행복도 기여분석
  -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모형 구축
- 법령검토 및 개정
  -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신설에 따른 법령 개정

❍ 정책현황분석

- 주요 관련정책인 특별교부세 개념 및 운영 현황
- 교부금 제도 현황
- 지특회계 현황 및 문제점

❍ 자료 구축

-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분석단위별 기초자료 형성
  -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신설을 반영한 국가전체의 사회계정행렬 구축으로 국가산업을 구분에 따른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의 직간접적 파급효과 파악
  - · 문화 연산일반균형 구축(안)을 통해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로 인한 국민의 후생(welfare) 변화를 제시
  - · 대통령직속균형발전위원회의 삶의질 만족도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체감도 재활용

❍ 이론 모형 구축

- 3가지 주요 이론모형을 제시
- 전체 모형 frame별 기대산출 효과를 제시
  - · 로짓모형을 활용한 문화시설 만족도 증대요인의 추출
  - · 로짓모형을 활용한 문화부문의 행복도 기여 정도 추출
  - · 사회계정행렬 및 일반균형모형을 적용한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후생변화 추출
- 일반균형분석모형과 차별적으로 로짓모형을 시행하여 주민행복 증진,

만족도 증진에 대한 문화여가부문의 기여와 시설확충의 논리를 제시

❍ 수정된 방향 제시

- 시설확충 및 필요성, 그리고 후생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정책 설정 외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할 정책 방향 제시

3) 연구분석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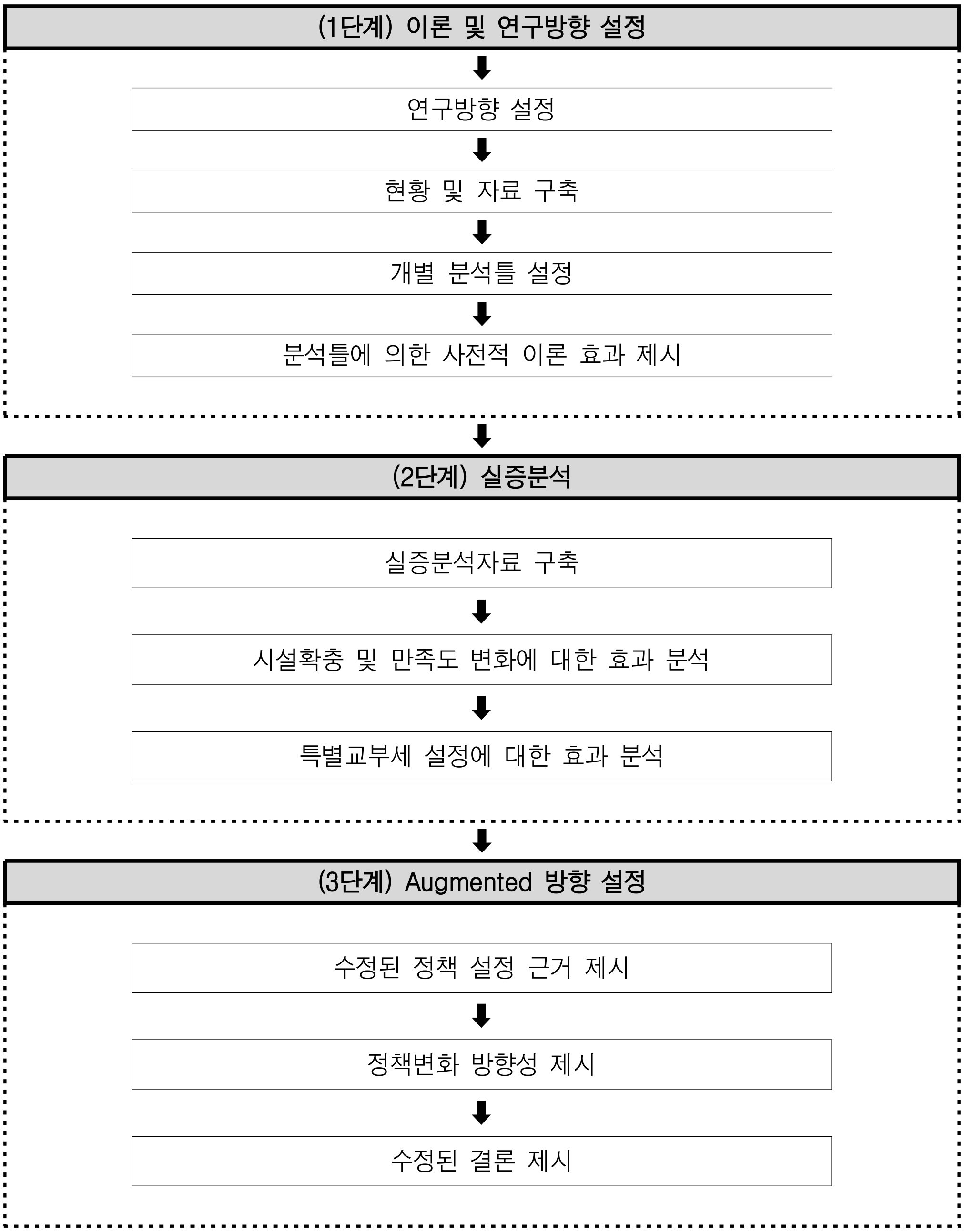
(1단계) 이론 및 연구방향 설정
연구방향 설정
현황 및 자료 구축
개별 분석틀 설정
분석틀에 의한 사전적 이론 효과 제시
(2단계) 실증분석
실증분석자료 구축
시설확충 및 만족도 변화에 대한 효과 분석
특별교부세 설정에 대한 효과 분석
(3단계) Augmented 방향 설정
수정된 정책 설정 근거 제시
정책변화 방향성 제시
수정된 결론 제시

4) 연구분석체계

<그림 Ⅰ-1>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 검토 분석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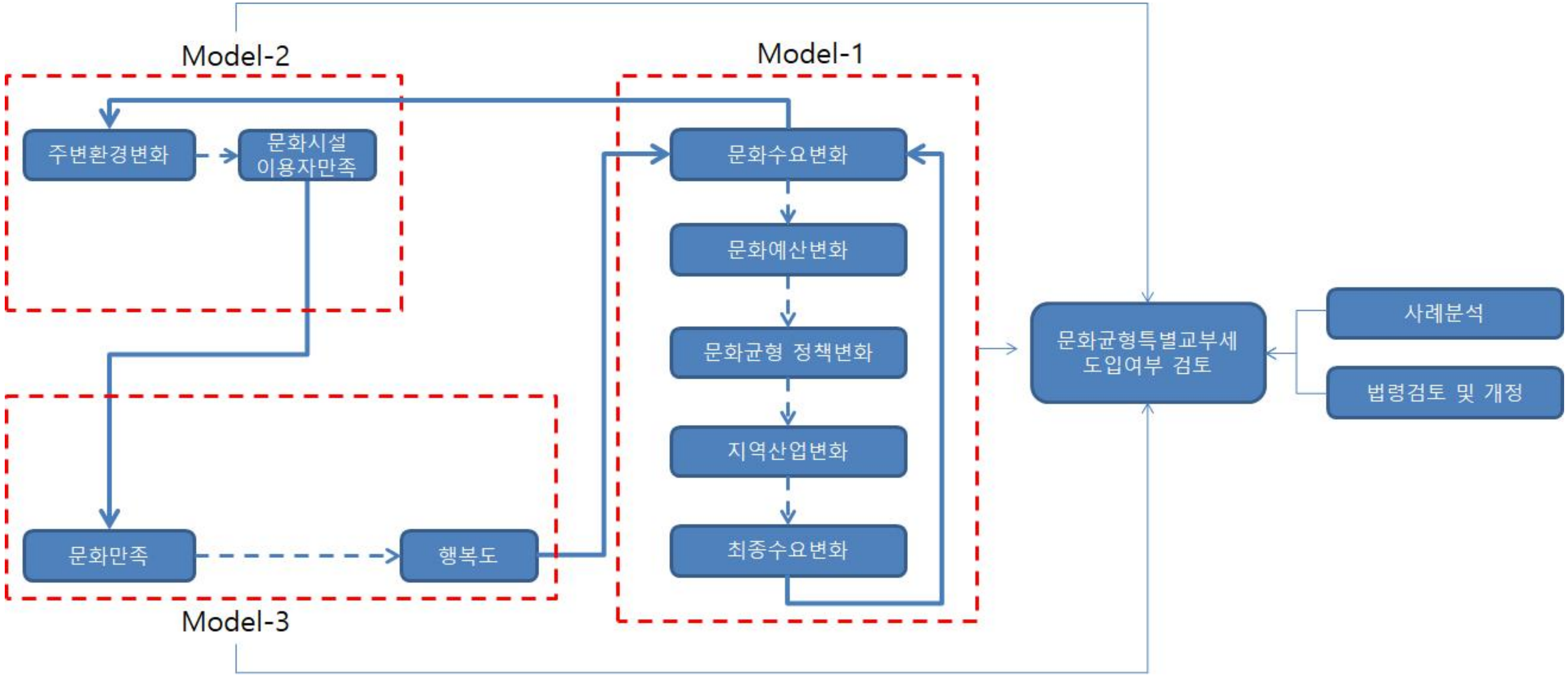
Model-2
주변환경변화
문화시설 이용자만족
Model-1
문화수요변화
문화예산변화
문화균형 정책변화
지역산업변화
최종수요변화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여부 검토
사례분석
법령검토 및 개정
문화만족
행복도
Model-3

Ⅱ. 이론적 검토

1. 재정보조금 제도
2. 지방교부세 제도
3.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 수요 산정방식
4. 지역특별발전회계 제도

1. 재정보조금 제도

1) 정부간 보조금제도 : 이론적 측면

❍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보조금 유형

- 일반적으로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보조금은 용도, 교부기준, 지방비부담 여부, 재원규모 결정방식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됨
- (일반보조금 : general grants) ① 공식에 근거하여 교부액을 산정 후, ② "통"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서(lump-sum), ③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요구하지 않으며(non-matching), ④ 용도의 자율성이 보장됨

· 일부는 용도에 조건을 붙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정액보조금 운용

- (특정보조금 : specific grants, categorical grants) ① 공식이 아니라 상급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교부하며, ② 상급기관이 정한 용도에만 집행할 수 있고, ③ 상급기관이 요구하는 재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④ 이로 인하여 지자체의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이 상급기관에 구속되는 재원임

· 일부 재원의 100%를 상급기관이 부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매칭 방식 운용

<그림 Ⅱ-1>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보조금 유형의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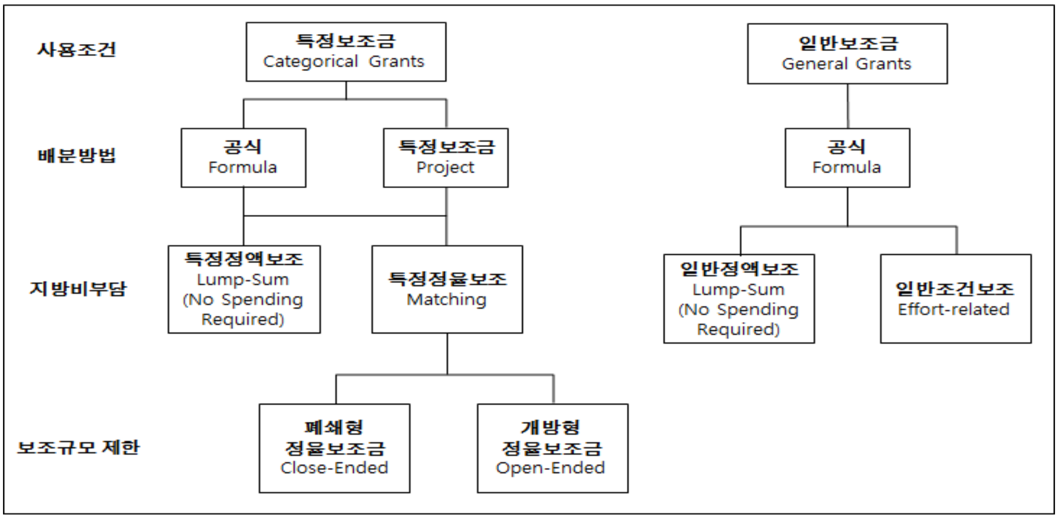
사용조건
배분방법
지방비부담
보조규모 제한
특정보조금 Categorical Grants
일반보조금 General Grants
공식 Formula
특정보조금 Project
공식 Formula
특정정액보조 Lump-Sum (No Spending Required)
특정정율보조 Matching
일반정액보조 Lump-Sum (No Spending Required)
일반조건보조 Effort-related
폐쇄형 정율보조금 Close-Ended
개방형 정율보조금 Open-Ended

❍ 보조금 유형별 정책효과 및 특성

– Bahl and Linn(1992)은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한 후 재원규모를 결정하는 방식, 교부기준 등으로 세부 분류하였음

· (재원규모 결정방식) 상급기관 조세수입의 일정비율에 연동하는 방식, 국회(혹은 지방의회)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방식, 지자체 세출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방식의 3가지 유형

· (배분방식) 지방세 징수실적에 연동하는 방식, 공식으로 산정하는 방식, 행정비용의 전액(일부)를 보전하는 비용보전방식, 특별방식 4가지로 구분

<표 Ⅱ-1> 보조금 유형의 세부 분류

		재원규모 결정방식		
		상급기관 조세수입의 일정비율	국회(혹은 지방의회) 재량 결정	특정사업 지출
배분 방식	지방세징수주의	A	L	N.A.
	공식주의	B	F	N.A.
	특정사업 지출	C	G	K
	임의적 결정	D	H	N.A.

– 보조금별 정책효과의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음

· (A∼D 유형) : 보조금 총액을 상급기관의 조세수입의 일정률로 정하여 운영하므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 공동세 성격이 있어 하급기관의 자주재원에 근접하는 조정재원이며, 특히 B유형 및 D유형은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수단으로 유용(단, A유형은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에 불리)

· (F∼H 유형) 총액을 국회(혹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므로 상급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감독하는데 유리(공식에 재정격차 완화 요소를 포함시키거나 재량적으로 교부한다 하여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고려하면 F유형과 H유형도 재정형평기능 발휘)

<표 Ⅱ-2> 보조금 유형별 재정효과 특성

보조금유형 목적	A	B	C	D	F	G	H	K
<중앙정부 입장>								
지방통제력 유지	−	−	−	?	+	+	+	+
특정세출 자극	?	?	+	?	?	+	?	+
지역간 형평성	−	+	?	+	+	?	+	?
징세노력 개선	?	?	+	+	?	+	?	+
<자치단체 입장>								
자기통제력 유지	+	+	?	?	−	−	−	−
예산의 효율성	+	+	?	?	−	−	−	−
세입 적합성 개선	+	+	+	?	−	−	−	+
<공통>								
행정비용 최소화	+	?	−	?	?	−	?	−

주 : +는 긍정적, −는 부정적, ?는 정책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함

2) 우리 나라의 정부간 보조금제도 현황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보조금

- (지방교부세)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최저한의 삶의 여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소위 National Minimum 차원에서 재원보장 및 재정형평 기능을 수행함
  - · (총액규모) 내국세 19.24%로 법률로 규정
  -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100%,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20%
  - · (배분방식) 일정한 공식에 입각하여 재정부족액(재정수요−재정수입) 산정 후, 재정부족액에 입각하여 교부액을 결정하며,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집행
- (국고보조금) 보조 여부는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며, 매칭비를 부과함

❍ 시·도와 시·군·구간 보조금

- 광역−기초 지자체간 재정조정은 조정교부금으로 운용하며,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음

· (일반교부금) 보통교부세처럼 재원보장 및 재정형평 기능을 수행하며, 공식으로 교부액을 산정하고, 용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일반정액보조금

·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처럼 시지역현안 해소나 시·도 시책사업에 지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함

· 총액규모 및 배분방식은 특별시 및 광역시 조례로 자율 운영

– (시·군 조정교부금) 도(道와) 시·군간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함

· (총액규모) 지방재정법(§29①)에 규정

·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 시·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50만 이상 시 47%)

· (배분방법) 지방재정법(§29②) 및 시행령(§36③)에 규정

· 인구 50%, 시·도세 징수실적 20%, 재정력지수(재정여건 반영 지표) 30%

<표 Ⅱ-3>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형	총액규모 결정방식		배분 방식	정책목적	재정형평화 요소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일반	내국세 일정율 (19.24%)	97%	공식	재원보장, 재정격차 완화	지역균형 수요
	특별교부세		특정		3%	임의	재해복구, 지역현안	×
	소방안전교부세		특정	담배 개별소비세 20%		공식 (임의)	소방, 안전 시설 확충	△
	부동산교부세		일반	종합부동산세		공식	재원보장, 재정격차 완화	재정력역지수
국고보조금	일반 보조금	법정보조금	특정 매칭	법령 규정		임의 (공식)	특정사업 장려	차등보조율
		비법정보조금		재량적		임의		×
	지역 발전 특별 회계	시도 자율	포괄 매칭	일반회계 전입금(재량적), 주세 등 특정재원		공식	특정사업 장려	성장촉진지역
		시군구 자율				공식		차등보조율
조정교	시·군	특별교부금	특정	시·도 보통세 27%, 지방소비세 27%		임의	지역현안	×
		일반교부금	일반			공식	재원보장, 재정격차	역재정력지수

						완화	
부금	자치구	특별교부금	특정	시·도 보통세 일정비율1)	임의	지역현안	×
		일반교부금	일반		공식	재원보장, 재정격차 완화	보정수요

❍ 지방재정조정 재원별 정책적 특성

- 상기의 <표 Ⅱ-1> ∼ <표 Ⅱ-3>을 연결하면, 이론적 관점에서 본 지방재정조정 재원별 정책적 특성은 다음의 <표 Ⅱ-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총량을 시·도 보통세 및 지방소비세 27% (50만 이상 市 47%)로 정하고 있어 A유형∼D유형 중 하나인데, 징수실적, 인구,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B유형(공식주의)에 속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징수실적도 포함되어 있어 A유형(지방세징수주의)에 속하기도 함

· B유형으로서 일반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하며, 상급정부 입장에서는 지역간 재정형평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재원

· 반면에 C유형으로서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세징수력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정형평기능은 A유형보다 열등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성격을 A유형이나B유형에 둘 수 있다는 것을 말함. 즉, 재정형평기능에 중점을 두면 B유형, 지자체의 세입확충 등 자구노력을 중시하면 A유형의 성격을 부과할 수 있음

<표 Ⅱ-4> 지방재정조정 재원별 정책적 특성

유형	이전재원 종류	정책효과	
		장점	단점
B	• 보통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일반조정교부금(자치구)	• 재정운영 자율성 • 재정격차 완화 • 재원보장 및 안정성	• 지방세출 비효율 유발 • 지방세출 팽창 유발
A, B	• 일반조정교부금(시·군)	• 재정운영 자율성 • 재원보장 및 안정성	• 재정격차 완화 불확실 • 지방세출 비효율 유발 • 지방세출 팽창 유발
C, D	• 특별교부세 • 특별조정교부금	• 지방세입 적합성 • 특정사업 장려	• 재정운영 자율성 다소 미흡
F	• 지특보조(생활계정)	• 재정격차 완화 • 특정사업 장려	• 재정운영 자율성 다소 미흡
G	• 지특보조(경제계정) • 일반국고보조	• 지방재정 책임성 • 특정사업 장려	• 재정운영 자율성 매우 미흡 • 지방세입 적합성 매우 미흡

2. 지방교부세 제도

○ 보통교부세는 용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일반정액보조금(general lump-sum grants)으로서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총액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치단체가 용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집행하는 일반재원이며, 그 규모나 성격에서 지방세입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

❍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서 보통교부세의 중요성은 매우 막대하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부족재원의 보전은 물론 지역간 재정격차의 완화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운용함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불균형 등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을 보전

– 입지적, 인구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구조적으로 다른 현실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상호간의 수평적 재정조정도 추구

1) 지방교부세 제도의 목적

- 중앙과 지방의 세원 불균형(2016년 기준 국세 77.5 : 지방 22.5)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정도에 따라 그 재원을 보전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 도모

2) 지방교부세 제도의 성격

- 지방공유의 고유재원
  - 국세의 일부가 지자체 공유의 세(tax)가 되어 지자체에 객관적 기준에 의해 배분되는 재원(일종의 간접과징 형태의 지방세)
- 지방의 일반재원
  -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단. 법령에 반하여 무제한적으로 자의적인 사용은 불가능
-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 보완
  - 국가와 지방 간 재원 재배분 방안의 일환으로 수직적인 재원 불균형을 보완

3) 지방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 일반재원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 보전
-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에서 발생하는 기준재정수요 · 수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연도 중에 발생한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지역현안수요, 재난복구 및 재난·안전관리, 시책수

요)에 대처하는 재원(보통교부세의 보완적 기능)

❍ 부동산교부세

- 2005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 재산세를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감소분 보전을 위해 신설되었으나, 2010년에 시 · 도세인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교부

❍ 소방안전교부세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2015년 신설

<표 Ⅱ-5> 지방교부세의 운영 개요

구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목적	재원보전 지자체간 불균형 시정	특별재정 수요대응	소방 및 안전 시설확충, 안전관리 강화등	재원보전 지자체간 불균형 시정
재원구성	내국세 19.24%의 97%	내국세 19.24%의 3%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 20%	종합부동산세 총액
‘16년도 예산	33조 2,438억원	1조 282억원	4,147억원	1조 4,446억원
용도	제한 없음	조건 또는 용도지정	명시적 규정 없음	제한없음
배분방법	수요대비 수입액 부족액 기준 공식배분	지역현안, 재난안전, 시책 등 심사배분	현황·소요, 노력, 여건 등 공식배분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 교육 등 공식배분
교부대상	시도 및 시군 (광역 1, 기초6 불교부)	시도 및 시군 자치구	시도	시군구 (세종, 제주 포함)
자금교부	분기별	수시배정	분기별	분기별

3.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 수요 산정방식

1) 개요

-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을 토대로 교부액을 산정하는 세입·세출 보전방식으로 운용됨
-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을 합산한 후 지자체의 수요자체노력을 가감하여 산정함

기준재정수요액 = 기초수요액 + 보정수요액 ± 수요자체노력

- 기초수요액은 4개 측정항목, 16개 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 단위비용,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측정항목별 기초수요 = 측정단위 × 단위비용 × 보정계수
당해단체 기초수요액 = 측정항목별 기초수요액 합계

  - 단위비용은 동종단체(시·도, 시, 군)의 표준적인 조건을 구비한 자치단체가 지방행정 수행 시 소요되는 16개 세항목별 단위당 경비
  - 보정계수는 자연적, 지리적, 사회적 조건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단위비용의 차이가 나는 현실을 보정하기 위하여 단위비용을 할증, 할감하기 위한 반영비율
  - 16개 세항목을 대표하는 측정단위를 독립변수(X_i), 전년도 세출액(SFD)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준행정수요($\hat{Y}$) 산출

$$Y = f(X) = \text{상수항} + \alpha_1 X_1 + \alpha_2 X_2 + \alpha_3 X_3 + \ldots.\alpha_i X_i + \epsilon$$

$$\widehat{Y = \text{상수}}\text{항} + \hat{\alpha}_1 X_1 + \hat{\alpha}_2 X_2 + \hat{\alpha}_3 X_3 + \ldots.\hat{\alpha}_i X_i$$

$$\text{단위비용} = \frac{\sum \hat{Y}}{\sum X_i} = \frac{\text{표준행정수요 추계치의 합}}{\text{기준 통계치의 합}}$$

- 기초수입액은 보통세 수입액(결산기준)의 80%를 반영하며 세목별 특성에 맞는 Time Series기법을 적용하여 추계함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 ± 수입자체노력

❍ 지자체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달리 기준재정수입액은 보통세 추계액의 80%를 산입하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기준재정수입액도 기준재정수요액과 마찬가지로 보정수입액을 추가
- 산입율은 목적세수입액의 80%, 경상세외수입액의 80% 적용
- 일반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은 전전년도 정산액, 부동산교부세 전전년도 결산액의 80% 반영

<그림 Ⅱ-2>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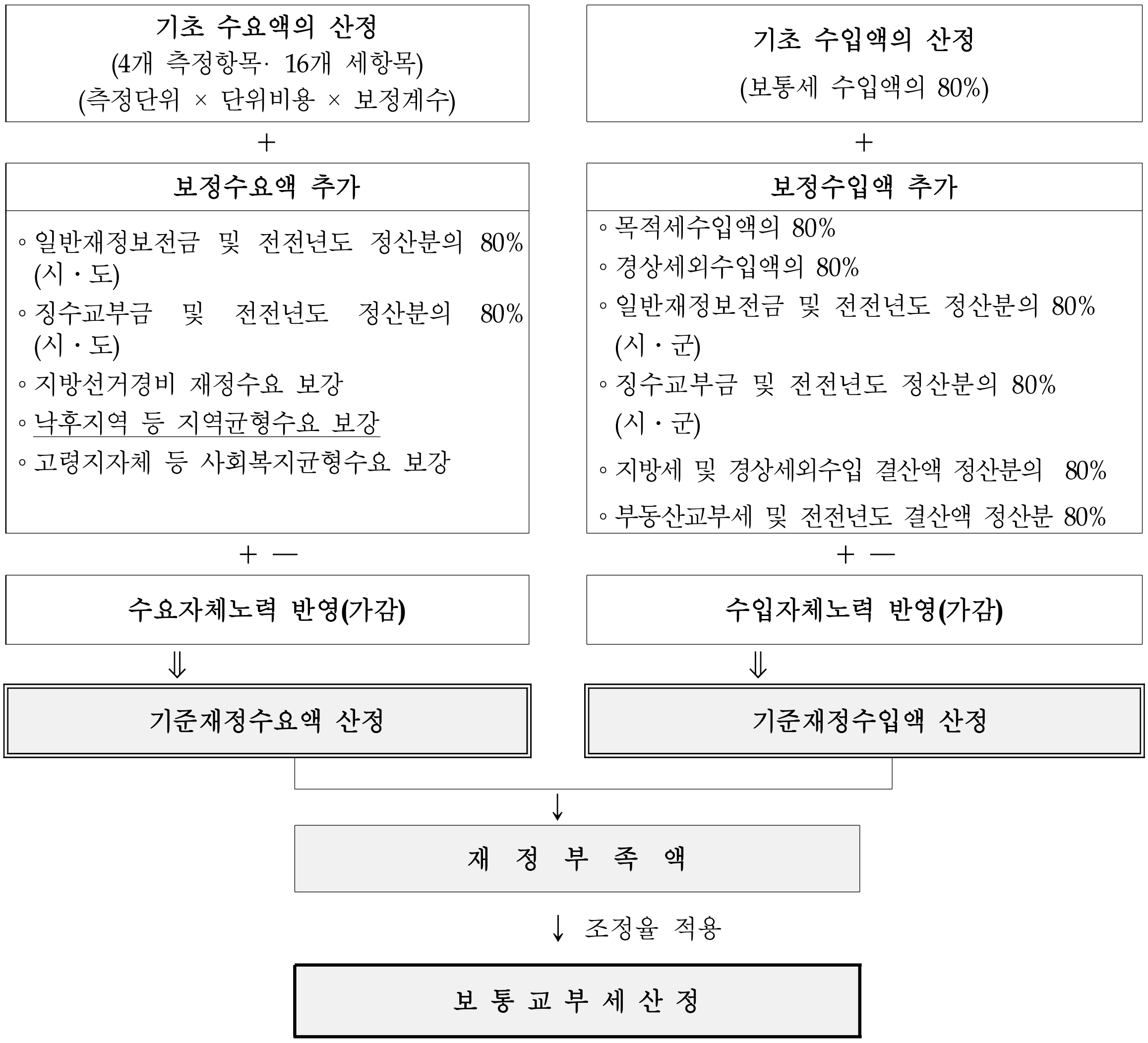
기초 수요액의 산정
(4개 측정항목· 16개 세항목)
(측정단위 × 단위비용 × 보정계수)
+
보정수요액 추가
◦일반재정보전금 및 전전년도 정산분의 80% (시・도)
◦징수교부금 및 전전년도 정산분의 80% (시・도)
◦지방선거경비 재정수요 보강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수요 보강
◦고령지자체 등 사회복지균형수요 보강
+ —
수요자체노력 반영(가감)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초 수입액의 산정
(보통세 수입액의 80%)
+
보정수입액 추가
◦목적세수입액의 80%
◦경상세외수입액의 80%
◦일반재정보전금 및 전전년도 정산분의 80% (시・군)
◦징수교부금 및 전전년도 정산분의 80% (시・군)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결산액 정산분의 80%
◦부동산교부세 및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 80%
+ —
수입자체노력 반영(가감)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
재정부족액
↓ 조정율 적용
보통교부세산정

❍ 보정수요액은 일반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관련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재원에 대한 정산분과 지방선거경비, 낙후지역,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수요를 보강함

❍ 보정수요액 중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수요 보강은 10개 세부 측정항목에 적용하며 지역균형수요 보강 중에서 도서·낙후지역은 일반관리비 등 지역개발비에 적용함

- 일반관리비는 도서·낙후지역의 면적과 인구 등 지역개발비는 도서·낙후지역의 면적을 적용
-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접경지역, 특화발전특구 등 전통적인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지역개발비의 지역균형수요 방식을 거쳐 보정수요액에 추가

<표 Ⅱ-6> 지역균형수요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측정항목		측정단위
일반관리비		도서·낙후지역의 인구, 면적
문화관광비		전전년도 재산세(토지분) 징수액,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환경 보호비	해안선	해안선길이, 댐면적, 저수지면적, 마을상수도 급수인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전년도 재산세(토지분) 징수액,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상수원보호구역	전전년도 재산세(토지분) 징수액,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수변구역	전전년도 재산세(토지분) 징수액, 수변구역 면적
	백두대간보호구역	전전년도 재산세(토지분) 징수액, 백두대간보호구역 면적
	산업단지면적	산업단지 면적
문화관광비		댐 연접지역 읍면동 개수, 인구수
경제 개발비	농업	방조제 길이, 배수갑문 개수, 논 면적, 밭 면적
	수산	방파제 길이, 물양장, 어장면적, 갯벌면적
	축산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마리
지역 경제비	산업단지	산업단지 관련 시·도세 감면액의 10%, 시세 감면액의 20%
	하이브리드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액, 신재생에너지 보급생산량

도로개량비		농어촌도로면적 증감률, 자건거도로 길이
도로유지비		농어촌도로 포장도면적
도로교통비		해수면 및 내수면 적자도선수, 벽지버스 노선길이
지역 개발비	군사시설	전전년도 재산세 징수액, 도서·낙후지역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면적
	개발제한구역	전전년도 재산세(토지분) 징수액, 개발제한구역면적
	폐광·개촉지구	폐광지역면적, 개촉지구면적
	접경지역	접경지역면적
	지역특화발전지구	지역특화발전지구면적
	공장밀집지구	도심지역내 공장밀집지역 면적

2)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의 특성

○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은 장려적 성격과 보상적 성격의 보정방식을 작동시켜 내부화기능을 수행함

-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지구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재정 수요는 장려적 성격으로 보정
- 반대로 문화재보호구역, 접경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갯벌, 습지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규제지역은 보상적 성격
- 도서·오지는 National Minimum 충족 차원에서 보상적 보정(일반관리비)과 장려적 보정(지역개발비) 모두를 적용

<표 Ⅱ-7> 측정항목별 지역균형수요 보정방식과 특성

측정항목	측정단위	
	보상적 보정	장려적 보정
일반관리비	도서·오지지역	-
문화관광비	문화재보호구역	-
환경보호비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
농림수산비	갯벌면적	농업, 수산, 축산
지역개발비	적자도선·버스,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접경지역	도서·오지지역, 폐광·개촉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

4. 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

1) 지역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운용 기본방향 및 투자중점 목표

❍ 2019년 균특회계 예산안 재편을 통해 기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

- 지역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 지역자율계정, 경제발전계정 → 지역지원계정, 지역발전위원회 · 기획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기획단으로 명칭 변경

❍ 포괄보조 세부사업 추가

- (’18지침) 37개(시 · 도 31, 시 · 군 · 구 6) → (’19지침) 43개(시 · 도 37, 시 · 군 · 구 6)
- ’18예산 편성시 타 회계로부터 이관된 사업((국토부) 지방하천정비, 공공형택시지원, (농식품부) 농촌형교통모델, (문체부) 지역문화행사지원, (해수부)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등 5개 세부사업) 추가
- 사회적 가치 관련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신설

❍ 汎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타 회계로 추진하고, 지역 연계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은 균특회계로 추진

❍ 문화 · 체육시설 건립 관련 문체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사업을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

- (변경 전)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공공도서관 등 → (변경 후)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표 Ⅱ-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18.2.28)에 따른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회계 명칭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목적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 지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 효율적 추진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계정 구분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용어 변경	·지역발전위원회·기획단 ·지역생활권 / 경제협력권 ·지역발전계획·시책	·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단 ·기초생활권 / 광역협력권 ·국가균형발전계획·시책
예산 편성 절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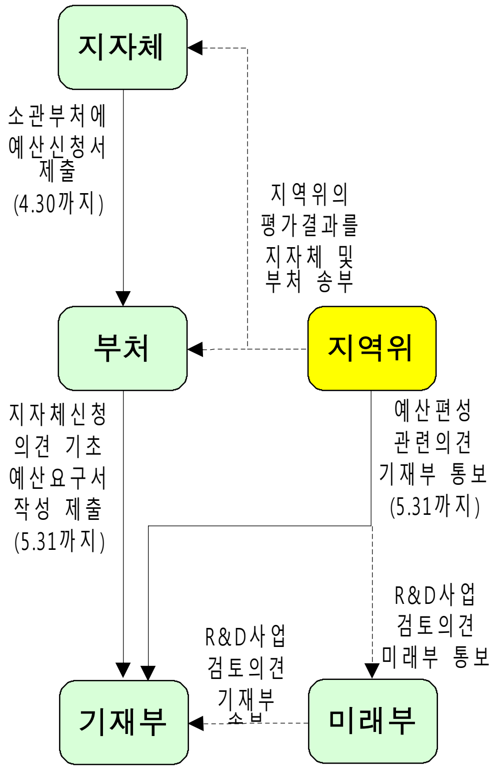 지자체 소관부처에 예산신청서 제출 (4.30까지) 지역위의 평가결과를 지자체 및 부처 송부 부처 지역위 지자체신청 의견 기초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5.31까지) 예산편성 관련의견 기재부 통보 (5.31까지) R&D사업 검토의견 미래부 통보 R&D사업 검토의견 기재부 송부 기재부 미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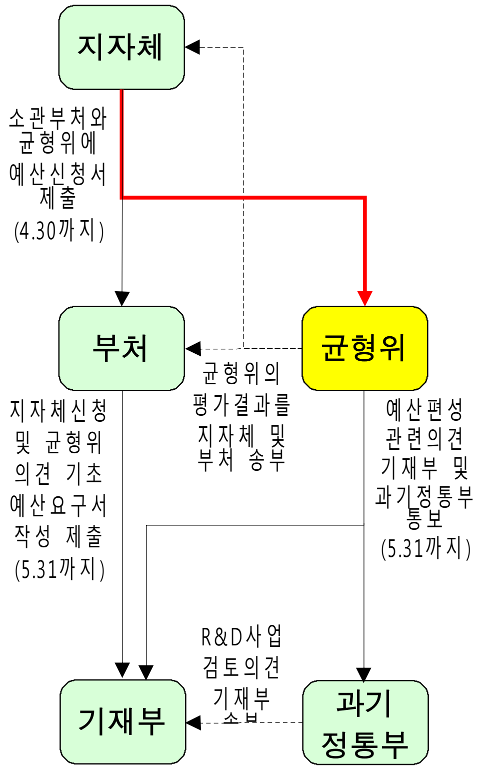 지자체 소관부처와 균형위에 예산신청서 제출 (4.30까지) 부처 균형위 균형위의 평가결과를 지자체 및 부처 송부 지자체신청 및 균형위 의견 기초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5.31까지) 예산편성 관련의견 기재부 및 과기정통부 통보 (5.31까지) R&D사업 검토의견 기재부 송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

1) 일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기한이므로 당해연도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균특회계 기본 구조

- ❍ 지역자율계정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지역지원계정은 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
  -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 4개 계정, 8개 사업군 구성
  - – 시·도 자율편성사업 [지역자율계정]
    -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지역자율계정]
    - · 성장촉진지역 등 시·군·구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 단, 신규소요는 부처가 공모를 통해 선정
  - – 자율편성사업 [세종·제주계정]
    - · 세종 및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 부처 직접편성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 · 단,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신규소요는 부처가 공모를 통해 선정
  - – 부처직접편성사업 [지역지원계정, 세종·제주계정]
    - · 광역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

<표 Ⅱ-9> 균특회계 구성

계정 편성방식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④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⑤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시·군·구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 편성사업	⑦부처직접 편성사업	⑧부처직접 편성사업

– 범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타회계로, 지역 연계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수행

– 생활기반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하고, 경제발전계정은 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

· 균특회계 안에서도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에 포함

·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 및 권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지역지원계정에 포함

3) 균특회계 대상 사업

❍ ((균특)지역개발계정→(광특)지역개발계정→(지특)생활기반계정→(균특)지역자율계정)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균특법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시·도자율편성), 성장촉진지역 등 기초생활권·행복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시·군·구 자율편성)

–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균특법 시행령 제36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의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포괄보조금사업(37+6개)지원대상

− 31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37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시군구는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시·군·구 개발사업 선택)으로 운영

<표 Ⅱ-10>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율	예산 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	고용부	① 사회적기업육성	70~75%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지원 등
	국토부	② 대중교통 지원	70~90%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③ 지역거점 조성지원	50~100%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

사업				설 등
		④ 주차환경개선지원	50%	·공영주차장건설지원
		⑤ 공공형택시지원	50%	·공공형택시지원
		⑥ 지방하천정비	50%	·지방하천정비
	농식품부	⑦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농촌체험관광 지원 등
		⑧ 농업기반정비	80%	·밭기반 정비 등
		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향토산업육성 등
		⑩ 농촌형교통모델	50%	·농촌교통지원
	농진청	⑪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문체부	⑫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박물관, 문예회관 등
		⑬ 관광자원 개발	50%	·관광지 개발 등
		⑭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생활체육공원 등
		⑮ 지방문화산업기반 지원	5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⑯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⑰ 지역문화행사지원	40~50%	·비엔날레지원, 종교문화행사지원 등
	문화재청	⑱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지역문화유산 개발
	복지부	⑲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산림청	⑳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임산물 수출촉진 등
		㉑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숲길 조성・관리 등
		㉒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임도시설
	산업부	㉓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새만금	㉔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여가부	㉕ 청소년시설 확충	30~88%	·청소년시설 확충
	중기부	㉖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6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해수부	㉗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0~50%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㉘ 어업기반정비	80%	·지방어항 등
		㉙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연안정비 등
		㉚ 수산물가공산업육성	30~50%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㉛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50%	·수산물분석장비 구축 및 운영
	행안부	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㉝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	50%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및 조사연구
	환경부	㉞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㉟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㊱ 생태하천복원	50~70%	·생태하천 복원

		㊲ 노후상수도정비	50~70%	·노후상수관망·정수장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㊳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지역개발 지원 등
		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노후도심 재생, 주거환경 개선
	농식품부	㊵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㊶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연계협력사업 및 취약지역개선 등
	행안부	㊷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㊸ 소하천정비	50%	·소하천정비

❍ ((균특)지역혁신계정→(광특)광역발전계정→(지특)경제발전계정→(균특)지역지원계정)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광역적 사업수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균특법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

- 광역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촉진 및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 광역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

한 경비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제주·세종계정 사업) 기존 시·도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자율편성사업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35조의2제2항/제35조의3제2항에서 정한 사업

-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 · 생활기반계정의 지원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와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 경제발전계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 ·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및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 · 생활기반계정의 지원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와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 경제발전계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 ·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 ·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표 Ⅱ-11>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5개 지역 개발사업 지원 체계

– 시·군·구에 대한 마을단위 개발 사업은 우선 "일반농산어촌·특수상황지역·도시활력증진지역" 등으로 구분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시·군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도로 등) 확충을 추가로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2개 이상 시군, 다부처 연계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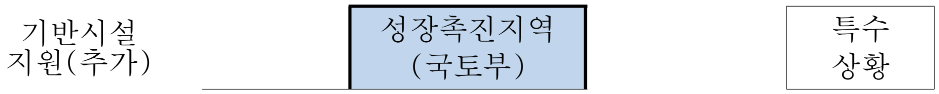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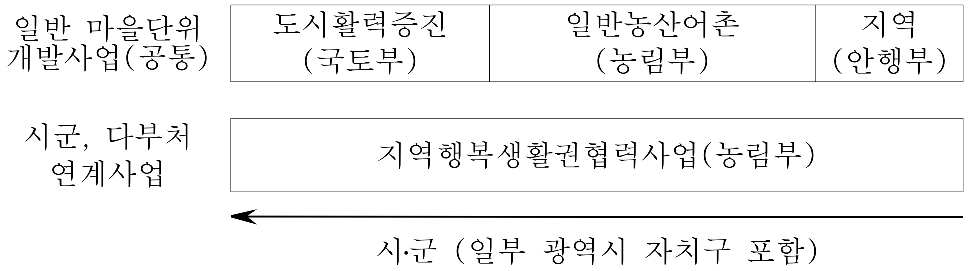

일반 마을단위
개발사업(공통)
도시활력증진
(국토부)
일반농산어촌
(농림부)
지역
(안행부)
시군, 다부처
연계사업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농림부)
시·군 (일부 광역시 자치구 포함)

구　분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	특수상황	성장촉진
계(229)	123	143	15	70
시(78)				3개 지역중 특별 배려가 필요한 70개 시·군 및 185개 도서
일반시(21)		19	2	
도농복합시(57)	52		5	
군(82)	71	3	8	
구(69)	–	69		

Ⅲ. 관련 사례

1. 국외 사례
2. 국내 사례
3. 시사점

1. 국내 사례

1) 소방안전 교부세

□ 소방안전 교부세의 개념

- 소방안전 교부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교부세로 17개 시도별로 교부함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며, 2015년 3,141억원, 2016년 4,147억원, 2017년 4,588억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음

<표 Ⅲ-1>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현황

총 교부액 (2015~2017 교부총액)	소방분야	안전분야	특수수요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기타 (‘17년 교부액 중 본예산에 미편성액)
1조 1,876억	8,676억	2,559억	185억	456억

- 2015년에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지난 3년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예산 확대와 소방·안전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소방안전 교부세 현황

-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에 도입되어 지난 3년간 총 1조 1,876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음
- 이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분야에 77%인 8,676억원이, 교통사고 감소 사업 등 안전분야에 23%인 2,559억원이 투자되었음
  - 노후·부족 소방장비 집중개선을 위해 ‘17년까지 소방분야에 75% 이상 투자(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 경기 96%, 강원 78%, 서울 77%, 충남 77%의 실적을 보임

❍ 소방분야에 투자된 8,676억원 중 약 81%인 6,997억원이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현장대응 장비 교체·보강 사업에 집중 투자되었음

❍ 그 밖에도 노후 소방청사 개선에 1,250억원을 비롯하여, 소방안전교육 장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개선 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됨

<그림 Ⅲ-1>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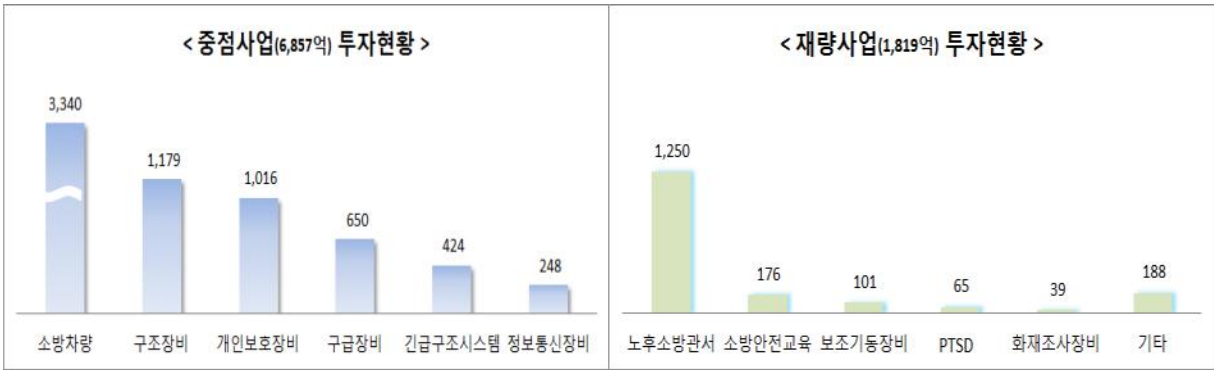

<그림 Ⅲ-2> 안전분야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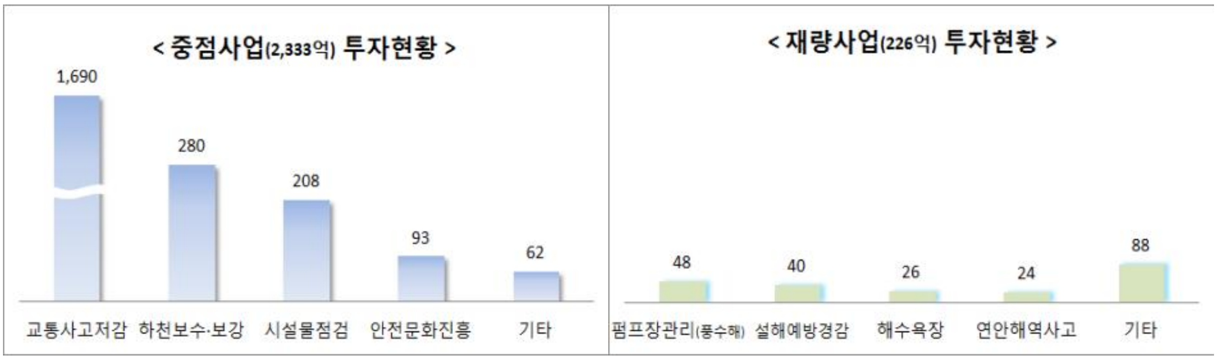

❍ 안전분야의 경우는 2,559억원 중 약 66%인 1,690억원이 미끄럼방지 시설, 중앙분리대, 안전표지판 설치·보수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되었음

❍ 이 밖에도 하천의 누수제방 보수 등 풍수해 관련 사업에 328억원을 비롯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 안전문화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됨

□ 소방안전 교부세의 효과(소방분야)

❍ 2014년에 7,637억원이던 소방분야 사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교부전보다 52.3%가 증가함

-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된 이후, 시·도가 소방사업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 뿐 아니라, 자체 지방비를 활용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으로 볼수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소방분야 지방비 투자(소방안전교부세 제외)

- 소방관련 지자체의 투자규모 변화:
- ‘14년 총 7,637억 → ‘15년 총 10,792억 → ’ 16년 총 11,879억 → ‘17년 총 12,222억

<그림 Ⅲ-3> 소방정책 사업비 규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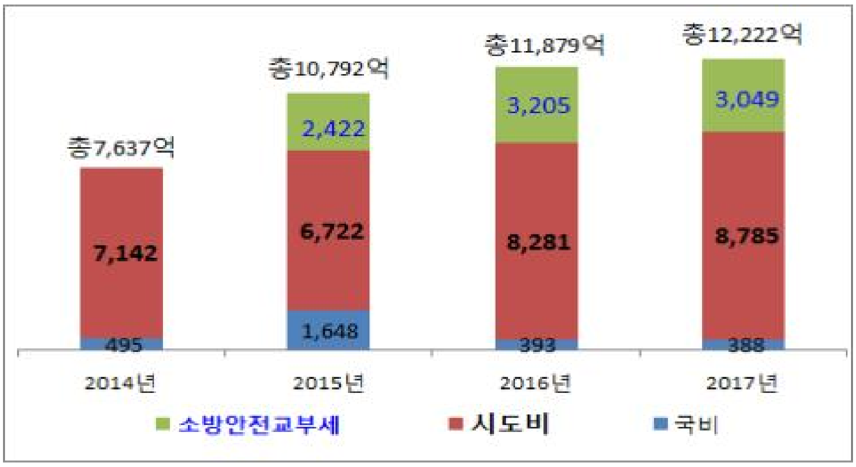

❍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주

요 소방장비의 교체·보강에 집중 투자됨

- ❍ 2015년에 소방공무원들의 개인안전장비가 100%보급되었으며, 2017년까지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화된 주요 소방차량과 부족한 구조·구급장비 등이 100% 개선되는 등 지역 간의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소방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함

□ 소방안전 교부세의 효과(안전분야)

- ❍ 교통사고 감소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전인 2014년 7,749억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후 연평균(’15~’17년) 9,610억원으로 24.0% 증가
- ❍ 풍수해 감소 사업은 2014년 2조 9,832억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후 연평균(’15~’17년) 3조 1,980억원으로 7.2% 증가
- ❍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된 이후 지방의 안전투자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안전분야에 대한 지방의 투자 확대도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함

<그림 Ⅲ-4> 도로교통 사고 및 풍수해 관련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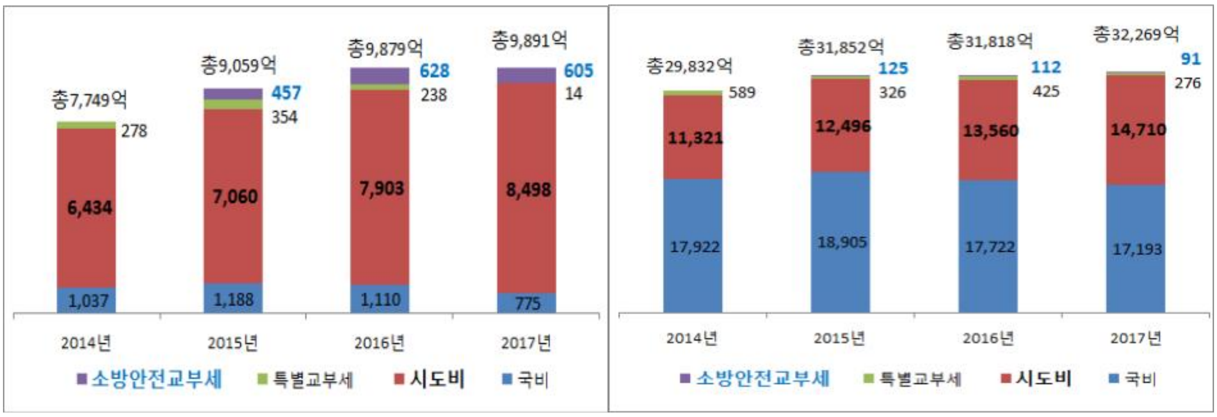

도로교통 사고 관련 투자현황

풍수해 관련 투자현황

❍ 소방안전교부세가 집중투자 된 교통사고의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던 도로교통사고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후인 2016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

❍ 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투자된 지방도로(고속도로, 국도 제외)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5년 210,660건에서 2016년 199,611건으로 11,049건이 감소

- 전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량 11,118건(’15년 232,035건, ’16년 220,917건) 중 99%를 차지
- 소방안전교부세가 교통사고 피해감소에도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됨

<표 Ⅲ-2>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별 투자현황

구분	부문	사업명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8,676 (100%)	2,422 (100%)	3,205 (100%)	3,049 (100%)
중점사업	소계		6,857 (79%)	1,674 (69%)	2,542 (79%)	2,641 (87%)
	소방시설확충	기동장비 교체·보강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구조차 등)	3,340 (38%)	554 (23%)	1,363 (43%)	1,423 (47%)
		보호장비 교체·보강	1,016 (12%)	243 (10%)	350 (11%)	423 (14%)
		정보통신장비 교체·보강	248 (3%)	79 (3%)	80 (2%)	89 (3%)
		구조장비 교체·보강	1,179 (14%)	388 (16%)	385 (12%)	406 (13%)
		구급장비 교체·보강	650 (7%)	245 (10%)	215 (7%)	190 (6%)
		긴급구조시스템및장비 확충·보강	424 (5%)	165 (7%)	149 (5%)	110 (4%)
재량사업	소계		1,819 (21%)	748 (31%)	663 (21%)	408 (13%)
	소방시설확충	기동장비 교체·보강 (이동체험차량, 위성중계차 등)	101 (1%)	60 (2%)	41 (1%)	-
		화재측정장비 교체·보강	39 (0%)	31 (1%)	6 (0%)	2 (0%)
		소방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교체·보강	47 (1%)	18 (1%)	20 (1%)	9 (0%)
		노후소방관서개선	1,250 (14%)	390 (16%)	508 (16%)	352 (12%)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강화	65 (1%)	28 (1%)	20 (1%)	17 (1%)
	소방안전관리강화	소방안전교육	176 (2%)	106 (4%)	54 (2%)	16 (1%)
		재난대응역량강화 소방훈련	30 (0%)	6 (0%)	13 (0%)	11 (0%)
		기타(안전체험관건립, 소방출동로확보, 양보위반단속장비교체보강, 소방안전점검 장비확충, 다중이용업소화재위험평가)	111 (1%)	109 (5%)	1 (0%)	1 (0%)

<표 Ⅲ-3> 안전분야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별 투자현황

구분	부문	사업명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2,559 (100%)	719 (100%)	942 (100%)	898 (100%)
중점사업	소계		2,333 (91%)	581 (81%)	889 (94%)	863 (96%)
	안전시설확충	도로교통사고 저감관련사업 (교통표지,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안전표지, 도로포장 긴급보수, 이면도로 정비,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휀스 정비 등)	1,690 (66%)	457 (63.6%)	628 (66.6%)	605 (67.4%)
		하천유지관리 (누수제방 보수, 배수시설 정비 등)	280 (11%)	87 (12%)	107 (11%)	86 (10%)
	안전관리강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59 (6%)	5 (1%)	73 (8%)	81 (9%)
		특정관리시설점검	49 (2%)	6 (1%)	30 (3%)	13 (1%)
		해수욕장 안전관리	18 (1%)	(재량)	(재량)	18 (2%)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사업 (안전교육·훈련, 캠페인, 행동요령 개발 등)	93 (4%)	18 (3%)	39 (4%)	36 (4%)
		지역안전관리활동 강화	21 (1%)	1 (0%)	10 (1%)	10 (1%)
	기타(공유림안전정비, 재난관리자원, 저수지·댐안전점검 등)		23 (1%)	7 (1%)	2 (0%)	14 (2%)
재량사업	소계		226 (9%)	138 (19%)	53 (6%)	35 (4%)
	안전시설확충	설해 예방 및 경감대책 (염화칼슘, 제설자재 구입 등)	40 (2%)	10 (1%)	10 (1%)	20 (2%)
		연안해역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인명구조함 설치)	24 (1%)	8 (1%)	11 (1%)	5 (1%)
	안전관리강화	해수욕장 안전관리	26 (1%)	13 (2%)	13 (1%)	(→중점)
		저수지·댐 안전점검	19 (1%)	14 (2%)	5 (1%)	(→중점)
		토출관로 개선 등 배수펌프장* 보수 * 우천시 관거로 유입된 빗물 하천 방류시설	48 (2%)	38 (5%)	5 (1%)	5 (1%)
	기타(안전체험관건립, 도시공원안전유지관리, 재해지도, 재난관리자원, 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및복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급경사지정밀진단,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 지역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재난대응역량강화 안전훈련)		69 (3%)	55 (8%)	9 (1%)	5 (1%)

2) 분권교부세

□ 분권교부세 의의 및 도입배경

- ❍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전재원의 형태
  - 이양사업에 대한 지출결정권의 자율성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임
  - 도입초기에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0.94%(2005년 내국세의 0.83%)로 2009년까지 한시적 운영과 동시에 2010년에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도록 법제화
- ❍ 분권교부세를 통하여 시행되는 사업들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
  - 분권교부세를 통하여 시행되는 사업들 중 사회복지사업이 67개로 전체의 45%를 차지하였으며, 그에 따른 재원 5,959억원은 전체 분권교부세 재원의 62.2%에 달함
- ❍ 2010년 이후에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불교부단체에 재원을 이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 대두
  - 사회복지시설 등 기존의 보조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의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2014년까지 연장운영 끝에 2015년 1월부터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

□ 분권교부세의 보조금 특징

- ❍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설정
  -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경상적 수요에 대한 재원보장 기능을 담당
  - 도입당시 한시적 재원으로 대상사업에 따라 일정수준의 지속적인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객관적 산식으로 배분이 가능한 경우를 경상적 수요로 구분
  - 보통교부세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인 재정부족액

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만을 측정하여 교부액을 산정하게 된다는 차이점

❍ 분권교부세의 보조금으로서의 특성은 국고보조금과 보통교수에의 중간적 성격에 해당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비용 보전적 성격을 갖는다.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보존함
- 완전히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기 전 단계인 포괄보조금의 형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됨
-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

<표 Ⅲ-4> 분권교부세의 보조금적 특성

구분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정책목적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격차 완화	-국고보조사업-지방이양사업비용 보전	-부동산시장 안정 -재정격차완화	-특정사업장려	-균형발전 촉진
재원구성	-내국세의 19.24% (분권교부세 포함)	내국세0.94%	-종합부동산세	-국가예산 (일반회계)	-국가예산 (특별회계)
용도	용도지정 없음 (특별교부세는 제외)	용도지정 없음 (비경상적 수요분 제외)	용도지정 없음	용도지정	용도지정
배분방법	산정공식	산정공식	보유세감소분 재정력	사업우선순위	계정별 총액 사업효과
성격	일반재원	일반재원	일반재원	특정재원	특정재원

❍ 분권교부세는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에 편입되어 수치상으로는 재정

자율성을 높아지는 결과를 보임

- 총량적인 재원 규모가 충분히 편성되지 못하였고, 개별 사업단위별로 관리되는 등 기존의 국고보조금과 운영의 차별성이 적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

□ 분권교부세의 제도변화

- 분권교부세 제도는 도입과 동시에 재원의 부족, 수요산정 및 교부방법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6년 도입 1년 후에 법정교부율의 인상 등 운영체계 변화
  -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지방대응비가 의무적으로 책정되어 이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 과중
  - 따라서 2005년에 도입된 이듬해 2006년에 분권교부세율을 내국세의 0.83%에서 0.94%로 0.11%p 인상하여 그 전액을 사회복지분야에 충당
- 수요산정내역에서 주요산정기준은 경상 77개, 비경상 72개(기존 경상 74, 비 경상 75개) 재원비중 역시 경상 45.3%(2005년 65.6%)로 비경상적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듦
  - 아울러 이양사업의 수요산정방법에서 그 기준을 사업별 국고보조금 5년 평균에서 전년도 사 업별 예산편성액을 재정수요액에 최대 반영하였고, 교부액에 있어서 재정력지수를 반영
  - 수요배분기준을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 간 조정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 조정은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짐
- 교부체계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 체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에서 광역에 교부하여 다시 기초에 배분하도록 그 체계를 변환

<표 Ⅲ-5> 2006년 분권교부세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구분		2005년	2006년
재원	법정률	내국세의 0.83%	내국세의 0.94%
	규모	8,454억원	1조 24억원 (인상분 전액 사회복지 수요액에 배정)
수요산정내역	수요산정기준	경상 74개, 비경상 75개 (일반 39, 특정 36)	경상 77개, 비경상 72개 (일반 41, 특정 31)
	재원비중	경상 65.6%, 비경상 34.5% (일반 6.0%, 특정 28.5%)	경상 45.3%, 비경상 54.7% (일반 3.3%, 특정 51.4%)
	수요산정기준	사업별 국고보조금 5년 평균	전년도 사업별 예산편성액
	교부액조정	담배소비세로 조정	재정력지수 반영
	수요별배분기준	경상적 수요 광역: 11개 산정항목 기초: 국고보조금 5년 평균교육액 비중	비경상적 수요 일반수요: 특광역시30%, 도70%(본청14%, 시군56%) 기초단체 배분기준(인구비중 강화)
교부체계조정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시도, 시군구)	특별광역시: 본청으로 일괄교부 도: 본청과 시군에 교부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광역단체 역할강화(본청 교부)

- ❍ 분권교부세가 도입 초부터 사회복지분야 등을 포함해 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과중 문제로 운영되는 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
- ❍ 2010 년에 계획한대로 보통교부세에 통합되어 운영되기로 하였으나, 오히려 분권교부세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더 큰 복지재정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 2009년 9월 16일에 2014년까지 연장 운영의 결정
- ❍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149개의 대상사업 통·폐 합과 수요산정 방식의 개선하였음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2011년도에 분권교부세의 개편을 단행함
- 먼저 기존의 총149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거나 통합되어 운영되던 사업을 선별하여 90개 사업으로 통·폐합
- 지방의 재정수요와 관련이 없는 비경상적 수요의 일반수요 사업은 폐지하여 경상적 수요사업으로 통합 운영
-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과 유사한 특정수요에 대한 재원의 축소와 함께 경상적 수요의 비중을 재원배분에서 더욱 높였으며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의 비중이 2010년 이전 47:53에서 2011년에 51:49로 변화함
- 이후 2014년부터 1개의 경상적 수요(미혼모 중간의 집 운 영: 사회복지 경상수요) 사업을 폐지하여 86개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교부하였으며 2015년에 노인양로시설운영, 장애인주거시설운영, 정신요양시설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등 4개 사업은 국가로 환원하고 그 재원은 지방교부세로 통합되도록 함

❍ 따라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은 지속적인 변화 끝에 사회복지 분야 45개, 문화관광 5개, 농림수산 14개, 공공 근로 1개, 여성인력개발 2개 등 총 67개 경상적 수요사업 19개 비경상적 사업 등 총 8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2014년까지 운영

❍ 한시적으로 연장·운영되어 왔던 분권 교부세는 2015년에 폐지되었고 보통교부세에 통합되어 보통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됨

<표 Ⅲ-6>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체계 변화 내용

<table>
<tr><th colspan="3">2005～2010년</th><th></th><th colspan="2">2011～2014년</th><th></th><th>2015년</th></tr>
<tr><td rowspan="2">경상적 수요 (92개)</td><td colspan="2">비경상적 수요(57개)</td><td rowspan="2">⇒</td><td rowspan="2">경상적 수요(67개) (기존 경상적 수요와 일반수요 통폐합)</td><td rowspan="2">비경상적 수요(19개) (기존 특성수요 그대로 유지)</td><td rowspan="2">⇒</td><td rowspan="2">82개 사업 보통교부세 환원 (장애인주거, 노인양로, 아동보호, 정신요양 시설제외)</td></tr>
<tr><td>일반 수요 (34개)</td><td>특정 수요 (23개)</td></tr>
</table>

□ 분권교부세 영향

- 분권교부세 폐지 이후 시도, 시군구 집단내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남
  - 중앙정부, 광역시도 차원의 지역간 불평등 완화 정책을 모색해야 함
  - 우리나라 기초지자제는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업이 매우 적으며 대부분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지방대응비로 필요한 예산을 수동적으로 부담해야 함
  - 시군구, 대도시, 농촌 등 유사한 경제, 사회, 행정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복지예산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움
- 분권교부세 폐지 이후의 군의 사회복지예산 불평등도가 높아짐
  - 군의 경우 시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 및 상위 광역자치단체에 재원을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
  - 분권교부세의 폐지와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은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용도가 정해 지지 않기 때문에 재정자율성이 낮은 군의 경우 지역의 재정상태에 따라 문화, 복지분야 등에 쓰기 보다는 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도로, 시설, 건설 등에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도가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이후 복지예산 불평등도가 증가
  - 광역도의 경우 시·군이 포함되어 이루어져 있고 경제·사회적 여건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예산의 불평등도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 해외 사례 : 프랑스 지역문화 분권

1) 현대의 프랑스 지방문화 정책

- 프랑스 대혁명 이후 중앙정부는 지역문화의 특수성 내지 주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어 지역주의와 분권화는 반혁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음
  - 국가통합을 위한 거의 모든 정책을 국가가 통제하고 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음
  - 그 결과 파리와 지방간의 문화적 불평등은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였음
- 1960년대 지방연극 활성화 운동 등이 존재했었고 국가의 문화행정이 재조직되어 문화 분산화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본격적인 지방분권에 기초한 문화분권은 1982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성과가 안정화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됨
- 현재의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의 전동과 예술 및 문화재 관리사업, 축제 등을 통하여 자신들 만의 독특한 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파리로 대표되는 프랑스 문화가 아닌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역문화들의 집합체로서의 프랑스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음

2) 레지옹(Region)의 문화정책

- 레지옹이라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이념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적 원칙을 존중하며, 지역의 교육, 문화, 정보, 재정 등의 기본계획을 담당함
- 문화 활동 분야에서는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 및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함
- 레지옹은 프랑스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

은 노력을 하고 있음

- 문화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 부서간 또는 국가와 지자체간 사업수행을 위한 조정기능이 요구됨
- 문화행정은 속성상 문화 서비스의 질이나 품격과 직결되므로 작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보다 적정 규모의 조직과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중앙 정부기관으로서 국가의 문화정책과 지역 특수성을 조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DRAC(Direction Regional des Affaires culturelles)이라는 기구는 설립 초기 중앙 정부의 문화분야의 기술, 전문성 등을 광역지역 문화 창달에 도움을 주는 선에 머물었었음
- 지역문화정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문화계획의 전반과 문화예술교육, 문화행정까지 포함하여 전 분야의 예술과 문화에 관하여 지역행정을 지원하고 있음
- FRAC(Fonds Regionauz d' art Contemporaine)과 FRAM(Fonds regionaux d' acquisition des musees) 등과 같은 현대미술과 지역 박물관 수장품 확대를 위한 기구들도 존재함
- 전문성과 재정의 부분에서 지역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혹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정책의 경우 국가가 지역을 돕는 방식으로 함께 해결해 나감
- CCTDC(Conseil des collectivites teritoriales pour le developpement culturel)는 문화부와 지자체가 지압소재 문화재와 예술에 관하여 얻는 협정으로 지자체와 정부가 문화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연계를 맺는 사업을 수행함
- 프랑스의 경우 이와같이 국가와 광역지방 간의 정책적 교류와 협조가 제도화된 기구와 사업을 통해서 지역 문화발전에 노력하고 있음

3) 데파르트망(Departement)의 문화정책

- ❍ 1982년 발효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관선 도지사가 맡았던 각 도의 행정관할권을 심의기관인 도의회의 논의를 거쳐 도의회의 의장이 갖게 함
- ❍ 문화적 분야 역시 전반적인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며 도립 도서관, 문서보관소,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그 지역을 알리는 사업을 함
- ❍ 중앙정부의 기관으로서 도와 연계된 SDAP(Services Departementaux de Larchitecture et du Partrimoine)는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화재와 문화지역 보전 및 보호행정을 실현하고 있음
- ❍ 미테랑 정부 시절의 문화발전협약(convection de developpement culturel)은 문화에 관한 재정적 확대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문화와 관계되는 광범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 문제에 있어서는 광역지방, 도, 코뮌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4) 코뮌(Commune)의 문화정책

- ❍ 지방자치 단체의 최소단위인 코뮌은 중앙정부의 행정관이 파견되지 않고 코뮌 의회에서 선출된 시장이 행정을 담당함
- ❍ 시의 거의 전 분야가 시장에게 일임되어 있으며, 문화분야는 공공 건축비 1% 징수를 통한 문화예술 분야 재정확보 및 예술학교, 도서관, 자료 보관소 등의 업무 등을 수행
- ❍ 80년대 초에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로 인하여 프랑스의 도시문화 정책은 지역화, 전문화, 도시별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 미테랑 정권은 문화정책의 지방분권과 문화 민주화를 내걸어 각 지역

에서는 정당정책에서 비롯된 문화정책이 아닌 해당 지역 개발의 한 가지 방법으로써 문화정책을 펼치게 되었음

❍ 도시 이미지 개발 차원에서 문화예술이 진흥되었고, 도시의 삶의 질이 도시 수준의 평가기준이 됨

- 각 도시의 문화정책은 삶의 질에 대한 평가의 기준에 부응하여 시민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각종 문화향유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문화 정책 참여가 이루어져 이 단체들이 문화공간 확보 및 도시축제 행사 주관 등 문화정책의 중요한 부분에 참여하고 있음

<표 Ⅲ-7> 프랑스 지방정부의 문화업무 관련 권한

지자체	권한
레지옹 (région)	-레지옹의 박물관 조성과 재정지원 -문서 보존
데빠르트망 (département)	-데빠르트망의 도서관, 박물관 조성과 재정지원 -고문서 보존과 관리 및 고문서관리국 재정지원
코뮌(commune)	-코뮌의 도서관, 박물관 조성과 재정지원 -고문서 보전과 관리

5) 파리시의 문화행정체계

❍ 파리시는 공적공간본부(Pôle espace public), 경제·사회본부(Pôle économie et social), 시민서비스본부(Pôle service auxparisiens), 행정지원본부(Pôle fonctions support et appuiaux directions)의 4개의 산후부서를 가지고 있음.

❍ 이들 가운데 문화와 관련된 업무는 시민서비스본부 산하의 문화총국(Direction des affaires culturelles)과 청소년·스포츠 국(Direction de la Jeunesse et des Sports)에서 관장하고 있음

❍ 파리시의 ‘문화총국(direction des Affaires culturelles)'은 시장과

의회가 설정한 문화정책을 수행함

- 문화총국의 주된 임무는 모든 시민들에 대한 문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정책을 실행하는 것임

❍ 파리시의 문화총국은 2011년 현재 총 21개의 박물관, 19개의 공연장, 57개의 일반 도서관, 9개의 특수 도서관, 19개의 예술학교, 21개의 미술 아틀리에, 85개의 교회, 9개의 성당, 2개의 유태인교회, 6개의 일반 기념물을 관리함

❍ 문화총국의 주요 기능은 민간 문화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결정, 박물관의 문화유산 관리, 도시경관의 향상, 모든 유형의 예술가 지원, 독서 및 예술교육의 촉진, 동호인들의 활동 지원 등임

❍ 문화총국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임무를 지님

- 시의 문화유산을 관리, 보존 및 고취하고, 세속적 · 종교적 문화유산 등 파리의 역사를 보전함
- 모든 형태의 예술적 표현을 통해 파리의 문화적 창작과 보급을 지원함
- 도서관, 미술 아틀리에, 예술학교 조직을 통해서 문화활동과 예술교육의 발전을 조장함

❍ 파리시 청소년·스포츠국은 재정적 지원과 시설편의 지원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스포츠 활동과 체육 교육을 촉진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음. 또한 청소년·스포츠국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및 동반 역할도 수행함.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스포츠 활동의 조장 및 편의 제공
- 접근성이 높은 친환경적 스포츠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자치구와 협력하여 스포츠시설의 위치, 시간, 운영 등에 관한 이용객들의 요구를 반영
- 다양한 활동의 제공을 통해서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자율성 함양을 촉진함

- 청소년의 참여 민주주의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장소를 개선함

❍ 청소년 · 스포츠국은 일반사무과, 청소년과, 스포츠과의 3개 과로 이루어짐

6) 프랑스 지방정부의 문화예산 일반현황

❍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문화분야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02년 이후에는 꾸준히 10%를 유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수준별 문화예산을 2002년과 2006년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이 가장 많은 문화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뮌 다음으로는 데빠르트망, 꼬뮌연합, 레지옹의 순으로 문화예산을 지출함. 지출영역별로 살펴보면 코뮌은 문화유산보전과 전파 영역과 예술표현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7)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 : 파리시

❍ 연도별 투자예산의 배분 비율을 보면 전체 항목에서 문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의 10%에서 2006년에서 20010년 기간에 7%를 유지하였다가 2011년에 다시 10%를 회복함

❍ 스포츠와 청소년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에서 2009년 기간에 5%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 7%, 2011년 8%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파리시의 투자예산에서 문화와 스포츠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2%를 유지하고 있음. 파리시 예산에서 문화분야와 스포츠 · 청소년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의 경우에는 18%로 증가하였음

3. 시사점

1)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

❍ 지역의 균형적·발전적 정책지원을 위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활용한 문화 분야 교부세 확보 필요

- 문화는 외부효과가 큰 특성에 따라 많은 부분을 지자체의 사업을 중앙이 일부 보조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형태가 중앙정부 총예산의 26%를 차지
- 문화정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크지만 지방정부 간에 문화재정 비율 격차가 상당함

❍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에서는 문화적 최소기준 설정 및 관리가 미흡함

- 지방교부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지역균형 수요를 보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문화관광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하지만, 이는 지역내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될 때 이에 대한 보상적 측면의 성격이 강하며, 이는 문화적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지역별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및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에 교부하는 특별교부세에서도 문화재정에 대한 수요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2)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문화균형교부세 신설로 지방이양 부작용 해소 및 정책효과성 제고

- 포괄보조금 형태로 문화재정의 균형적 배분과 문화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적 활용을 도모함
- 지방분권화에 따른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를 문화균형교부세의 재원으로 확보가 필요하며, 의미있는 정책효과를 기

대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총액의 약 2%인 1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 문화균형교부세의 배분은 재정수준, 사회변화, 주민 수요 및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법령 등의 근거 확보를 통해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지방교부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령에 문화균형교부세의 효율적 운영기준, 배분을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등의 구체적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Ⅳ.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경제적효과

1. 모형체계
2. 문화시설 도입 및 확충 필요성
3. 문화부문의 주민행복 기여 분석
4. 문화균형특별교부세 효과

1. 모형체계

1)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의 사전적 분석 구조

❍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은 이용자의 만족도, 전체 행복, 최종수요의 변화로 도출

- 이용자의 만족도 및 전체 행복 변화는 문화시설의 질적 및 양적 확충에 따른 필요성 및 중요성 검토를 위해 사용
- 문화시설의 필요성은 이용자 만족도가 제고될 경우의 시설확충 필요성을 반영
- 문화시설 중요성은 국민의 행복도 증진을 고려할 경우의 문화여가부문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
- 필요성과 중요성이 고려될 경우를 문화수요변화로 가정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예산 변동성을 문화균형특별교부세로 반영
-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문화균형특별교부세가 반영될 경우의 지역의 변화를 최종수요의 변화로 제시

❍ Model-1 :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효과 분석

-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을 통한 자본 지원
- 자본 지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확충되는 부분을 반영
- 자본의 확충으로 인해 산업, 고용, 부가가치의 효과로 지역경제효과를 제시

❍ Model-2 :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문화시설 이용자 만족도 분석

- 문화시설 이용자만족(Model-2)은 수요자가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주변환경변화를 고려하였으며 기본적인 통제변수 및 문화시설의 예산, 시설수, 요금 적정성을 검토
- 특히, 시설 확충에 의한 문화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변화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더불어, 문화시설 이용자 만족도 변화를 유도하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 Model-3 : 국민행복에 미치는 문화여가부문 효과 분석
  - 전체 행복(Model-3)은 국민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요인 중 정량 및 정성지표의 변화를 고려하여 문화여가부문 변화에 따른 국민 행복도의 변화를 제시
  - 국민 행복도를 구성하는 14개 요인을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여 문화여가부문 외 타 부문이 변화할 경우의 국민 행복도의 변화를 제시
  - 특히, 문화여가 만족도가 변화할 경우의 국민 행복도의 변화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시설 이용자만족 변화, 국민행복도 변화에 미치는 문화여가부문의 기여변화, 문화균형특별교부세를 확충할 경우의 지역경제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틀은 아래와 같음

<그림 Ⅳ-1>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의 사전적 분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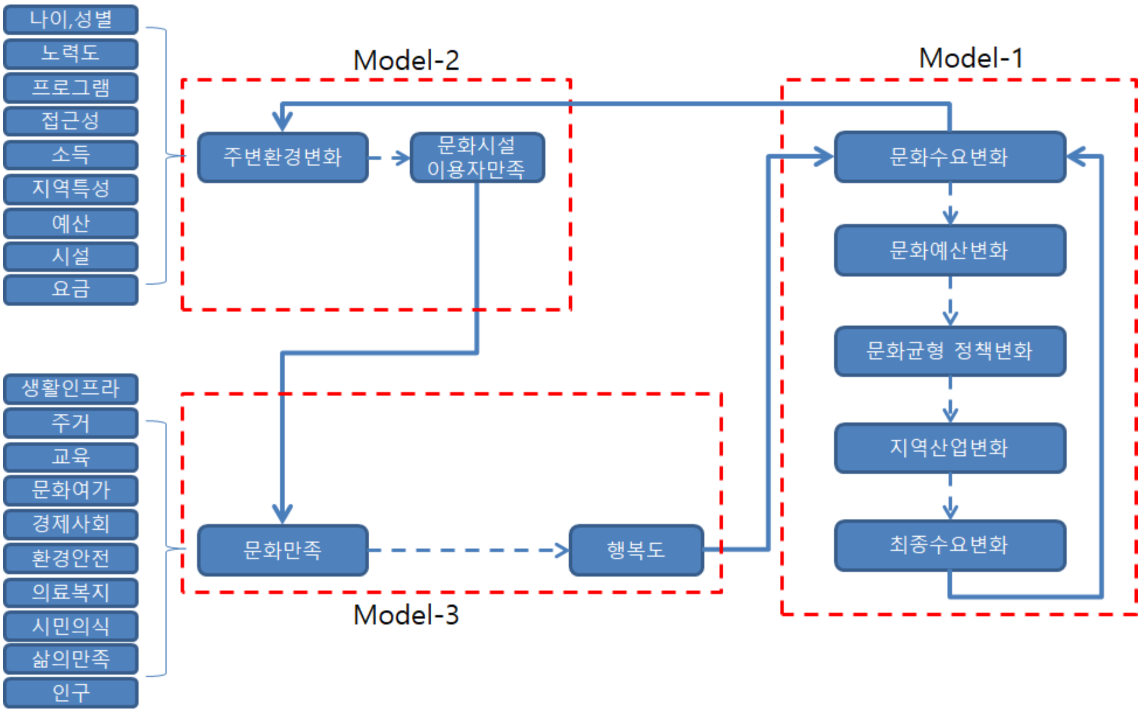
나이,성별
노력도
프로그램
접근성
소득
지역특성
예산
시설
요금
Model-2
주변환경변화
문화시설 이용자만족
Model-1
문화수요변화
문화예산변화
문화균형 정책변화
지역산업변화
최종수요변화
생활인프라
주거
교육
문화여가
경제사회
환경안전
의료복지
시민의식
삶의만족
인구
문화만족
행복도
Model-3

2) 분석 자료

- Model-1 :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효과 분석
    - 한국은행 (지역별) 산업연관표, 대차대조표
    - 사회계정행렬 구축을 통한 연산일반균형모형
- Model-2 :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산업 확충에 따른 문화시설 이용자 만족도 분석
    -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만족도의 결정요인의 분석 대상은 대상 문화기반시설을 공공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으로 한정
    -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시설 이용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공공문화기반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우선 선정
    - 대상 시설이 입지한 전체 시군구 232개 지역의 1인당문화관광예산과 문화기반시설수를 표준화함으로써, 표준화된 값 상중하를 적용하여 분석 대상 시도별 지역을 선별
    - 선별된 지역에 대한 분석자료는 문화부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재정고, 그리고 각 선별지역의 표준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로 구성
    - 조사표는 대면설문을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쾌적성 측면(5), 친절도 측면(5), 질적 측면(9), 활용 측면(7), 편리성 측면(4), 수준 및 중요도 측면(5)을 고려한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
    - 대면설문은 각 지역당 30표본을 대상으로 총 1,410표본을 실시하였으며, 공공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한 무작위 추출법(Random Sampling)을 활용하여 인구구조와 성별의 균형화된 구분을 반영하지 않음

<표 Ⅳ-1> 기초자료 구성 내용

분야	조사항목	비고
쾌적성 측면	이용편의성, 위생상태, 관리상태, 질서유지 상태	5점 척도
	중점 쾌적성 항목	
친절성 측면	친절정도(신속대응정도, 지식과 능력 유무정도), 프로그램 진행 성숙, 불편해소노력, 직원수	5점 척도
	중점 친절성 항목	
질적 측면	프로그램 흥미, 수준, 심리적안정, 정체성 및 유대강화, 적정 프로그램 제공, 요금, 운영시간	5점 척도
	질적 측면 관련 중요사항, 공공문화기반시설별 운영이 잘 안 되는 사항	
활용 측면	이용 빈도, 이용(관람)시 동반자, 이용(관람) 이유, 홈 페이지 방문 경험, 이용(관람)의 주 목적	
	이용해 본 공공문화기반시설	복수응답
	상세한 정보제공의 만족도	방문경험자로 한정
	개선을 위한 의견	주관식 응답
편리성 측면	접근성, 이정표 안내, 홍보 및 안내, 주차공간	5점 척도
	교통수단, 중점 편리성 측면	
시설의 수준 및 중요도 측면	이용 시 고려사항, 이용정보의 구득경로	
	전반적 만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거주여건에 대한 평가, 확산 기여도	5점 척도
응답자 특성	가장 자주 이용(관람)하는 공공문화기반시설, 성별, 연령대,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주) 리커드(Likert) 5점 척도는 매우 불만(1), 대체로 불만(2), 보통(3), 대체로 만족(4), 매우 만족(5)으로 구성

- 또한,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독립변수 항목인 쾌적성 측면, 친절도 측면, 질적 측면, 활용 측면, 편리성 측면, 수준 및 중요도 측면의 세부 요인에 대한 선별은 다수의 선택에 의하여 중요하다고 선별된 변수를 대표 변수로 활용
- 변수의 선별에는 각 요인항목에 대한 유의미한 구성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각 요인마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 및 베리맥스

(varimax)에 의한 요인회전으로 설명력이 높은 공통 요인들의 추출이 가능하다. 반면, 본 연구에서의 기초 자료는 척도변수 외의 변수들로도 구성되어 있어 중요도가 높아 응답 빈도수가 높은 변수를 최종 독립변수로 활용

<표 Ⅳ-2> 분석자료 기초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시설만족도	Y	3.48	0.788
성별	X_1	0.54	0.499
나이	X_2	29.21	12.686
소득	X_3	4.34	2.549
편의성	X_4	3.62	0.859
불편해소노력	X_5	3.40	0.870
프로그램수준	X_6	3.34	0.815
적정프로그램제공	X_7	3.13	0.858
요금	X_8	3.45	0.962
접근편리성	X_9	3.25	0.921
홍보 및 안내	X_{10}	2.84	0.892
지역특성	X_{11}	2.49	0.615
1인당예산(만원)	X_{12}	5.75	7.601
시설수(개)	X_{13}	7.45	4.485

주1) 척도화되어 조사된 소득, 지역특성, 1인당문화관광예산, 시설수는 크기에 따라서 구분

-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53.8%, ‘여성’이 46.2%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음
-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3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대’ 27.1%, ‘30대’ 16.3%, ‘40대’ 14.5%의 순으로 높음

-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대학교’가 4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25.8%, ‘중학교’ 25.7%의 순으로 높음

<그림 Ⅳ-2>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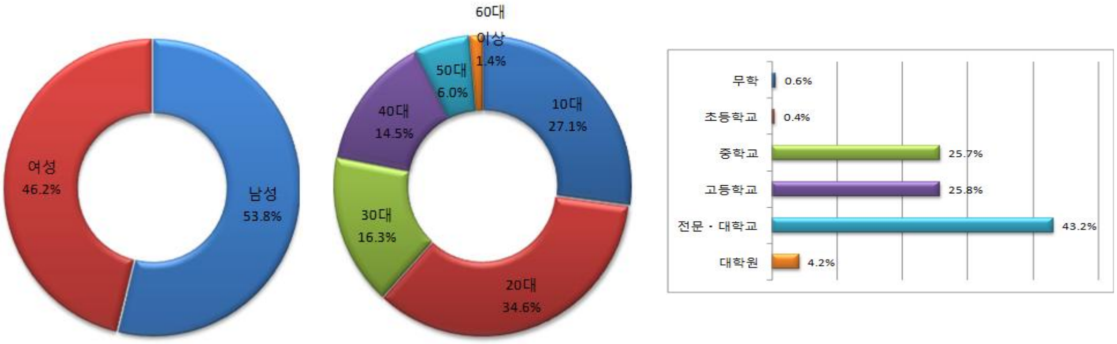

-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특별시, 도, 광역시 순이며, 불만족도 역시 도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으로써, 특광역시보다 도부에서의 만족도가 극단적으로 대조됨
- 연령대별로는 10대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감소함
- 더불어,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감소하며, 불만족 정도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 만족도는 대체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만족도 보다는 불만족도의 증가가 크게 나타남

<표 Ⅳ-3>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불만족	만족
전체		0.9%	9.3%	37.4%	45.8%	6.5%	100.0%	10.2%	52.3%
거주지 구분	특별시	–	5.6%	44.4%	42.2%	7.8%	100.0%	5.6%	50.0%
	광역시	–	8.1%	40.7%	45.7%	5.4%	100.0%	8.1%	51.1%
	도지역	1.7%	10.5%	34.4%	46.3%	7.2%	100.0%	12.2%	53.5%
성별	남성	1.7%	6.2%	33.6%	51.8%	6.7%	100.0%	7.9%	58.5%
	여성	–	12.9%	41.9%	38.9%	6.3%	100.0%	12.9%	45.2%
연령대	10대	1.6%	8.6%	23.6%	56.0%	10.2%	100.0%	10.2%	66.2%
	20대	0.6%	10.0%	38.3%	46.7%	4.3%	100.0%	10.6%	51.0%
	30대	1.7%	7.8%	52.2%	34.3%	3.9%	100.0%	9.5%	38.2%
	40대	–	13.7%	35.6%	41.0%	9.8%	100.0%	13.7%	50.8%
	50대	–	3.5%	54.1%	38.8%	3.5%	100.0%	3.5%	42.3%
	60대 이상	–	–	60.0%	40.0%	–	100.0%	–	40.0%
학력	무학	–	66.7%	–	–	33.3%	100.0%	66.7%	33.3%
	초등학교	–	–	83.3%	16.7%	–	100.0%	–	16.7%
	중학교	1.7%	6.6%	26.4%	54.5%	10.7%	100.0%	8.3%	65.2%
	고등학교	–	11.0%	40.4%	42.6%	6.0%	100.0%	11.0%	48.6%
	전문・대학교	1.1%	9.4%	39.4%	46.5%	3.6%	100.0%	10.5%	50.1%
	대학원	–	6.8%	67.8%	15.3%	10.2%	100.0%	6.8%	25.5%
가계 소득	150만원 미만	1.8%	13.5%	42.4%	35.3%	7.1%	100.0%	15.3%	42.4%
	150만원–200만원 미만	–	6.6%	37.5%	46.7%	9.2%	100.0%	6.6%	55.9%
	200만원–250만원 미만	–	8.6%	37.7%	51.7%	2.0%	100.0%	8.6%	53.7%
	250만원–300만원 미만	–	9.2%	42.5%	41.4%	6.9%	100.0%	9.2%	48.3%
	300만원–350만원 미만	–	6.1%	34.5%	57.6%	1.8%	100.0%	6.1%	59.4%
	350만원–400만원 미만	–	9.5%	34.7%	51.7%	4.1%	100.0%	9.5%	55.8%
	400만원–500만원 미만	4.5%	10.4%	33.6%	45.5%	6.0%	100.0%	14.9%	51.5%
	500만원 이상	1.7%	9.9%	31.9%	44.4%	12.1%	100.0%	11.6%	56.5%
	밝힐 수 없음	–	9.4%	48.2%	35.3%	7.1%	100.0%	9.4%	42.4%

- 문화시설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하느냐에 대한 응답은 특별시와 도부문에서 광역시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유도됨
- 특히,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 정도가 높다고 평가

되었으며, 학력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Ⅳ-4> 문화시설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도

구분		전혀 기여 하지 않음	대체로 기여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기여	적극적으로 기여	합계	부정적	긍정적
전체		2.9%	11.5%	38.0%	42.0%	5.6%	100.0%	14.4%	47.6%
거주지 구분	특별시	1.1%	8.9%	30.0%	46.7%	13.3%	100.0%	10.0%	60.0%
	광역시	3.0%	13.7%	40.7%	38.0%	4.6%	100.0%	16.7%	42.6%
	도지역	3.1%	10.3%	37.1%	44.2%	5.4%	100.0%	13.4%	49.6%
성별	남성	3.3%	10.5%	37.8%	43.5%	4.9%	100.0%	13.8%	48.4%
	여성	2.5%	12.6%	38.2%	40.2%	6.5%	100.0%	15.1%	46.7%
연령대	10대	1.6%	16.0%	37.4%	39.8%	5.2%	100.0%	17.6%	45.0%
	20대	3.7%	11.9%	41.2%	38.5%	4.7%	100.0%	15.6%	43.2%
	30대	-	10.9%	44.3%	41.7%	3.0%	100.0%	10.9%	44.7%
	40대	2.9%	5.4%	25.4%	56.1%	10.2%	100.0%	8.3%	66.3%
	50대	12.9%	7.1%	37.6%	40.0%	2.4%	100.0%	20.0%	42.4%
	60대 이상	-	5.0%	30.0%	35.0%	30.0%	100.0%	5.0%	65.0%
학력	무학	-	66.7%	-	-	33.3%	100.0%	66.7%	33.3%
	초등학교	-	-	83.3%	16.7%	-	100.0%	-	16.7%
	중학교	1.7%	13.8%	39.7%	40.2%	4.7%	100.0%	15.5%	44.9%
	고등학교	3.8%	10.2%	35.4%	46.2%	4.4%	100.0%	14.0%	50.6%
	전문·대학교	3.0%	8.9%	38.4%	43.0%	6.7%	100.0%	11.9%	49.7%
	대학원	5.1%	25.4%	40.7%	25.4%	3.4%	100.0%	30.5%	28.8%
가계소득	150만원 미만	3.5%	18.8%	32.4%	38.2%	7.1%	100.0%	22.3%	45.3%
	150만원-200만원 미만	-	5.9%	40.8%	47.4%	5.9%	100.0%	5.9%	53.3%
	200만원-250만원 미만	4.6%	12.6%	23.2%	55.6%	4.0%	100.0%	17.2%	59.6%
	250만원-300만원 미만	1.7%	11.5%	39.7%	42.0%	5.2%	100.0%	13.2%	47.2%
	300만원-350만원 미만	6.1%	12.7%	33.9%	41.2%	6.1%	100.0%	18.8%	47.3%
	350만원-400만원 미만	-	6.1%	53.7%	36.1%	4.1%	100.0%	6.1%	40.2%
	400만원-500만원 미만	4.5%	3.7%	32.8%	46.3%	12.7%	100.0%	8.2%	59.0%
	500만원 이상	2.2%	13.8%	42.7%	40.9%	0.4%	100.0%	16.0%	41.3%
	밝힐 수 없음	4.7%	17.6%	43.5%	23.5%	10.6%	100.0%	22.3%	34.1%

❍ Model-3 : 국민행복에 미치는 문화여가부문 효과 분석

- 세부지표 중 객관적 지표는 타당성, 신뢰성, 대표성, 독립성, 가용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 단위로 수집하였으며, 생활권간 상대적 비교를 위해서 비율 또는 인구당 지수로 변환하여 사용
- 또한, 주관적 지표는 13개 부문에서 선정하여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총 6,920개의 표본을 강제할당 적용
- 시범생활권 2개를 제외한 54개 지역생활권의 삶의 질 수준을 생활권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및 종합지표의 표준화점수 사용

· 즉, 전체 시군구를 도시, 도통, 농촌으로 지역별로 구분하고, 해당 부문을 객관과 주관, 그리고 이를 통합한 종합적인 수준으로 분석을 제시

<표 Ⅳ-5> 삶의 질 지표체계의 구성

영역	부문	지표	내용	특성	
				단위	성격
생활권 기반	생활 인프라	도로율	도로면적/행정구역면적	%(+)	정량
		만족도	생활인프라 만족도	11점척도	정성
	주거	1인당 주거면적	총주거면적/총인구	㎡/인(+)	정량
		노후주택비율	노후주택수/총주택수	%(−)	정량
		주택보급률	총주택수/총가구수	%(+)	정량
		만족도	거주지 만족도	11점 도	정성
	환경	천인당폐수배출업소		개소(−)	정량
		1인당 쓰레기배출량		톤/인(−)	정량
		만족도	환경 만족도	11점척도	정성
지역경제 · 고용창출	소득	1인당 GRDP	GRDP/총인구	천원(+)	정량
		만족도	소득 만족도	11점척도	정성
	재정	1인당 지방세		천원(+)	정량
	고용	고용율	취업자/15세이상인구	%(+)	정량
		천인당 사업체수		개소(+)	정량
		만족도	고용 만족도	11점척도	정성
교육		천인당 사설학원수		개소(+)	정량
		천인당 학교수		개소(+)	정량
		만족도	교육 만족도	11점척도	정성
문화 · 생태	문화	천인당 문화시설수		개소(+)	정량
		만족도	문화여가 만족도	11점척도	정성

	생태	공원면적비율	공원면적/행정구역면적	%(+)	정량
		1인당 녹지면적		㎡/인(+)	정량
		만족도	생태 만족도	11점척도	정성
복지 · 의료	복지	천인당 복지시설수		개소(+)	정량
		만족도	복지 만족도	11점척도	정성
	의료	천인당 병상수		개(+)	정량
		천인당 의료인수		인(+)	정량
		만족도	의료 만족도	11점척도	정성
기타	지역 활력	인구증감율	2012년~2013년 증감율	%(+/-)	정량
		고령화율	65세이상인구/총인구	%(-)	정량
		경제활동인구비율	경제활동인구/총인구	%(+)	정량
	안전	천인당화재발생건수		건수(-)	정량
		천인당교통사고건수		건수(-)	정량
		만족도	안전 만족도	11점척도	정성
	가족 및 공동체	천인당 이혼건수		건수(-)	정량
		십만명당 자살건수		건수(-)	정량
		만족도(1)	가족유대 만족도	11점척도	정성
		만족도(2)	시민의식 및 공동체 만족도	11점척도	정성

- 유형별 삶의질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는 <표 Ⅳ-6>와 같으며, 문화부문의 시설 공급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지표는 도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도시외 지역으로의 시설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주관적인 만족도는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나타남으로써 시설 공급의 역차별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만족도는 도시부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문화시설에 대한 공급은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공급된 총량 외에 추가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을 의미함
- 삶의 질 여건을 의미하는 객관적 지표의 경우 중추도시생활권은 생활권기반부문, 소득부문, 생태부문, 의료부문, 지역활력부문, 가족 및 공동체부문 등에서 가장 높고, 도농연계생활권은 재정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생활권은 주거부문, 고용부문, 문화여가부문, 복지부문에서 가장 높음
  - · 반면 삶의 질 만족을 의미하는 주관적 지표의 경우 중추도시생활권은 교육부문이 가장 높고, 도농연계생활권은 고용부문과 안전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생활권은 환경부문, 생태부문, 복지부문, 가족 및 공동체부문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생활인프라 중 환경의 객관적 부문은 도시와 농촌이 각각 0.1, −0.24이지만, 주관적인 만족도는 각각 0.31, 1.35로 농촌에서의 환경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지역경제 및 고용에 관한 소득부문의 객관적인 부문은 도시와 농촌이 각각 0.2, −0.06으로 도시에서 소득에 대한 삶의질 수준이 높으며, 주관적인 부문 역시 도시와 농촌이 각각 -0.52, −1.22로 도시에서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교육부문 역시 객관적인 부문이 도시와 농촌이 각각 0.11, −0.00, 주관적인 부문 만족도가 0.61, −1.25로 도시에서의 교육부문 삶의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복지의료 중 복지부문의 객관적 부문은 도시와 농촌이 각각 -0.6, 0.74로 시설 공급이 역차별이 이루어졌으나, 주관적인 만족도 역시 -0.47, 1.02로 도시보다 농촌에서의 삶의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생태 부문은 문화여가와 생태로 구성

· 문화생태 부문 중 문화의 객관적인 부문은 도시와 농촌이 -0.4, 0.63으로 시설 총량은 농촌이 높아 농촌으로의 시설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주관적인 부문이 -0.37, −1.25로 농촌에서의 문화부문 삶의질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도시에 비해 농촌에 대한 시설 공급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시설 총량이 아닌 질적 측면의 낙후 및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는 총량 접근법에 의한 문화시설의 공급의 단점 제시를 떠나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이 공급되어야하는 필요성을 제기

−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합산한 종합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중추도시생활권은 교육부문과 지역활력부문의 삶의 질이 우수한 반면, 농어촌생활권은 환경부문, 생태부문, 복지부문, 가족 및 공동체부문에서 삶의 질이 양호

- · 대체로 종합지표로 보는 총체적인 삶의 질 수준은 주관적 지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지표간 동등가중치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지표 보다는 주관적 지표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객관적 여건에 비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반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 사이에는 연관성이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의 객관적인 여건과 주관적인 만족도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음을 나타냄

– 더불어, 타부문에 비해 문화여가 부문의 표준화값이 중추도시, 도통, 농어촌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취하고 있어 전체 시군구의 문화여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을 시사

<표 Ⅳ-6 > 부문별/생활권별 삶의 질 수준

영역	부문	도시 (중추도시권)			도시+농촌 (도농연계권)			농촌 (농어촌권)		
		객관	주관	종합	객관	주관	종합	객관	주관	종합
생활권기반	생활인프라	0.20	-0.22	-0.02	0.11	-0.59	-0.48	-0.47	-0.52	-0.98
	주거	-0.16	-0.06	-0.22	0.07	-0.16	-0.09	0.21	-0.90	-0.69
	환경	0.10	0.31	0.42	0.13	0.98	1.11	-0.24	1.85	1.61
지역경제, 고용창출	소득	0.20	-0.52	-0.32	-0.01	0.71	0.70	-0.06	-1.22	-1.29
	재정	0.12	-	0.12	0.21	-	0.21	-0.19	-	-0.19
	고용	-0.15	0.04	-0.11	-0.07	0.48	0.41	0.27	-0.69	-0.42
교육	교육	0.11	0.61	0.72	-0.03	-0.50	-0.53	-0.00	-1.63	-1.63
문화, 생태	**문화여가**	**-0.40**	**-0.37**	**-0.77**	**-0.22**	**-0.70**	**-0.92**	**0.63**	**-1.25**	**-0.62**
	생태	0.27	-0.56	-0.29	-0.22	1.58	1.36	-0.16	1.92	1.76
복지, 의료	복지	-0.60	-0.47	-1.07	-0.13	0.37	0.23	0.74	1.02	1.75
	의료	0.27	-0.10	0.18	-0.13	-1.18	-1.31	-0.14	-1.83	-1.97
기타	지역활력	0.45	-	0.45	0.19	-	0.19	-0.66	-	-0.66
	안전	-0.00	-0.16	-0.16	0.05	0.55	0.60	-0.08	0.50	0.42
	가족 및 공동체	0.38	0.40	0.78	-0.29	-0.14	-0.43	-0.20	1.02	0.82

주1) 표의 수치는 각 지표값의 단위 정상화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개별지표들을 표준화하는데 통상 Z-Score값을 이용

주2) 개별 삶의질 분석 결과는 해당 지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표준화 실시

- 행복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 및 지역 거점 대도시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의 대표성이 뚜렷한 지역의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행복도가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일반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에 대한 만족도는 인구 대비로 만족도가 도출됨으로 인해, 대도시보다는 중소지역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도시 지역에서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시설 이용 가능성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Ⅳ-3> 행복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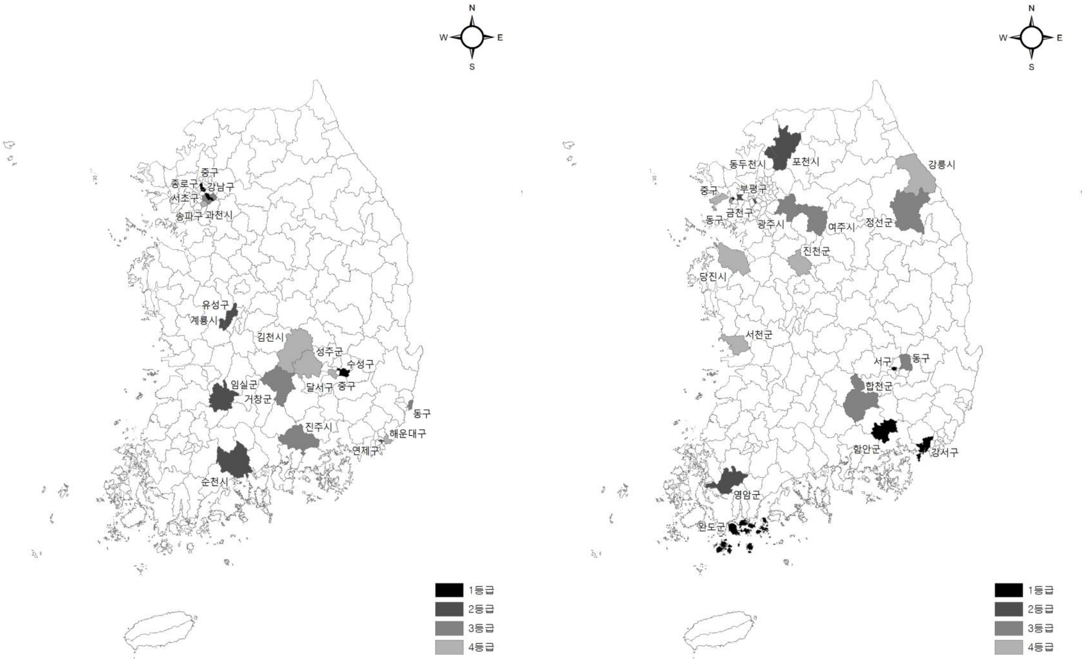
N
W
E
S
중구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
유성구
계룡시
김천시
성주군
수성구
임실군
거창군
달서구
중구
동구
진주시
해운대구
연제구
순천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N
W
E
S
동두천시
포천시
강릉시
중구
부평구
금천구
동구
광주시
여주시
정선군
진천군
당진시
서천군
서구
동구
합천군
함안군
강서구
영암군
완도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행복도 상위 20개 지역

행복도 하위 20개 지역

<그림 Ⅳ-4> 문화여가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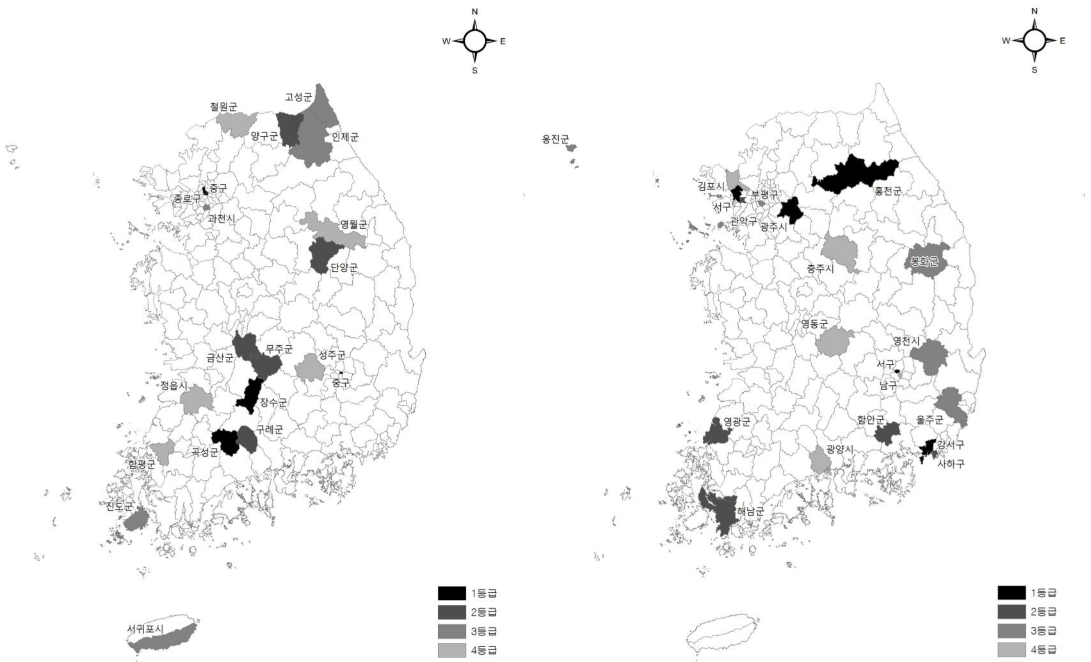
N
W
E
S
고성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중구
종로구
과천시
영월군
단양군
무주군
금산군
성주군
중구
정읍시
장수군
구례군
곡성군
함평군
진도군
서귀포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옹진군
김포시
부평구
서구
관악구
광주시
홍천군
충주시
봉화군
영동군
영천시
서구
남구
영광군
함안군
울주군
광양시
강서구
사하구
해남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문화여가 행복도 상위 20개 지역　　　문화여가 행복도 하위 20개 지역

3) 분석 모형

❍ 순서화 로짓모형

-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출과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서화(Ordered)된 형태의 자료를 활용한 Liao (1994)의 순서화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사용
- 본 모형은 확률 개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순서화된 다항의 선택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모형의 의의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다항선택성과 이산성을 회귀식에 적합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활용하였으며, 이항로짓모형을 순서화된 종속변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 Y와 관찰가능한 $\widehat{Y}$와의 관계를 적용

$$Y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tag{1}$$

$$\begin{aligned} Y &= 1 \quad \text{if } \widehat{Y} \le \mu_1 \\ Y &= 2 \quad \text{if } \mu_1 < \widehat{Y} \le \mu_2 \\ &\vdots \\ Y &= n \quad \text{if } \mu_{n-1} < \widehat{Y} \end{aligned} \tag{2}$$

- 이때 이산한 종속변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개념이 필요하며,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의 성격을 활용하여 누적분포함수값의 차이로부터 확률값 도출 $(F(\mu_n - \sum_{k=1}^{K} \beta_k X_k) - F(\mu_{n-1} - \sum_{k=1}^{K} \beta_k X_k))$

$$\begin{aligned} \mathrm{Pr}ob(Y = n) &= \mathrm{Pr}ob(\mu_{n-1} < \widehat{Y}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le \mu_n) \\ &= \mathrm{Pr}ob(\mu_{n-1}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le \mu_n - \sum_{k=1}^{K} \beta_k X_k) \end{aligned} \tag{3}$$

- 따라서, $Y \le n$일때의 확률값은 누적확률분포함수 $F(\mu_n - \sum_{k=1}^{K} \beta_k X_k)$와 같이 도출되며(식(4)), 누적로짓분포함수로 변환하여 역함수를 취하면 순서화로짓모형 식(6)이 도출

$$\mathrm{Pr}ob(Y \le n) = F(\mu_n - \sum_{k=1}^{K} \beta_k X_k) \tag{4}$$

$$\mathrm{Pr}ob(Y \le n|X) = F(\mu_n - \sum_{k=1}^{K} \beta_k X_k) = \frac{e^{\mu_n - \sum_{k=1}^{K} \beta_k X_k}}{1 + e^{\mu_n - \sum_{k=1}^{K} \beta_k X_k}} \tag{5}$$

$$\log\left[\frac{\mathrm{Pr}ob(Y \le n|X)}{1 - \mathrm{Pr}ob(Y \le n|X)}\right] = \mu_n - \sum_{k=1}^{K} \beta_k X_k \tag{6}$$

- 또한, 누적확률분포함수에서 확률을 도출할 경우에는 두 항간의 차이로부터 확률값을 도출

$$\begin{aligned}
\mathrm{Prob}(Y=1) &= L(\mu_1 - \sum_{k=1}^{K}\beta_k X_k) \\
\mathrm{Prob}(Y=2) &= L(\mu_2 - \sum_{k=1}^{K}\beta_k X_k) - L(\mu_1 - \sum_{k=1}^{K}\beta_k X_k) \\
&\vdots \\
\mathrm{Prob}(Y=n) &= 1 - L(\mu_{n-1} - \sum_{k=1}^{K}\beta_k X_k)
\end{aligned} \tag{7}$$

❍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 구축

- SAM을 구성하는 산업은 한국은행의 2010년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사용하였으며, 투입산출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는 국민계정에서 개별적으로 추출

<표 Ⅳ-4> 확장된 사회계정행렬 구조

	생산	요소	세금	가계	정부	투자	수입	총계
생산	○			○	○	○	○	
요소	○							
세금	○							
가계		○						
정부			○	○				
투자				○	○		○	
수입	○							
총계								

❍ 연산균형일반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구축

- 단순 CGE모형에서의 경제는 투자와 저축관련 요소에 시간이 개입되지 않은 정태적(static) 경제를 가정
- 또한, 국제무역이 배제된 폐쇄경제(closed economy)를 가정
- 모형구조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체 2개, 소비재 2개, 생산요소 2개를 의미
- 따라서, 생산물($Z_{i(j)}$)은 생산요소($F_{h,i(j)}$)에 의해서 소비되는 소비재($X_{i(j)}$)와의 관계를 의미

<그림 Ⅳ-5> CGE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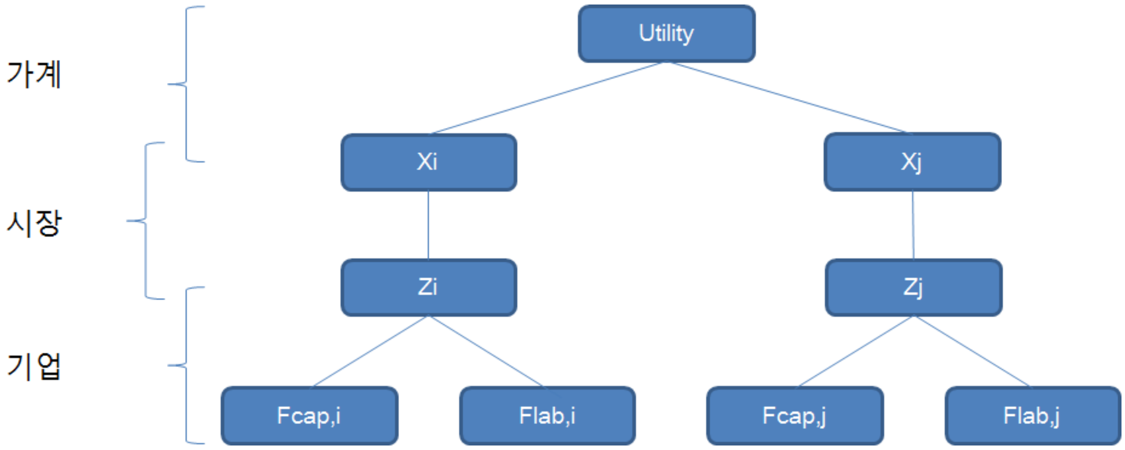
가계
시장
기업
Utility
Xi
Xj
Zi
Zj
Fcap,i
Flab,i
Fcap,j
Flab,j

- 가계부문 행태(behavior)

· 가계부문은 기업에 요소(endowed factor)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한다. 보통 자본과 노동으로 요소는 구분되며, 가계부문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소비행태를 선택하며 이때의 효용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type)이 적용

· 이를 위해 제약요인을 고려한 가계부문의 효용극대화는 식(8)과 같음

$$Max_{X_i} Utility = \prod_i X_i^{\alpha_i} \tag{8}$$

s.t. $\sum_i p_i^x X_i = \sum_h p_h^f F_h$

이때,

i,j : 산업별 생산물
h,k : 생산요소(자본, 노동)
U : 효용
X_i : i생산물에 대한 소비($X_i \geq 0$)
F_h : 가계부문의 h자원(endownment)
p_i^x : i생산물 가격($p_i^x \geq 0$)
p_h^f : f요소에 대한 가격($p_h^f \geq 0$)
α_i : 효용함수 계수($0 \leq \alpha_i \leq 1, \sum_i \alpha_i = 1$)

- 가계부문 효용극대화에 대한 라그랑지함수에 의해 i생산물에 대한 수요함수가 도출되며, 수요함수는 가격(p_h^f)에 의한 반비례, 소득($\sum_h p_h^f F_h$)에 의해 정비례한다. 이때의 수요함수는 식(9)과 같음

$$X_i = \frac{\alpha_i}{p_i^x} \sum_h p_h^f F_h \tag{9}$$

- 기업부문 행태

· 기업부문은 산업의 종류에 의해서 다양화되며, 자본과 노동을 사용하여 생산기술(production technology)에 의한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함

· 반면, 이때에는 기업구분에 의한 생산은 직접생산으로 가정하며, 부가적인 생산(by-product)는 고려에서 제외

· 따라서, 기업부문의 이윤극대화는 생산물과 투입 가격에 의해서 결정

$$Max_{Z_j, F_{h,j}} \pi_j = p_j^z Z_j - \sum_h p_h^f F_{h,j} \tag{10}$$

s.t. $Z_j = b_j \prod_h F_{h,j}^{\beta h,j}$

이때,

i,j : 기업
h,k : 생산요소(자본, 노동)
π_j : j기업 이윤
Z_i : i기업 산출
$F_{h,j}$: j기업의 h요소
p_j^z : j생산물의 공급가격
p_h^f : f요소에 대한 가격
$\beta_{h,j}$: 생산함수의 계수비율($0 \leq \beta_{h,j} \leq 1, \sum_h \beta_{h,j} = 1$)
b_i : 생산함수의 조정된 계수(scaling coefficient)

- 따라서, 라그랑지함수를 이용하여 도출된 수요함수는 식(11)과 같으며, 공급가격 p_j^z와 산출 Z_i에 정비례

$$F_{h,j} = \frac{\beta_{h,j}}{p_h^f} p_j^z Z_j \tag{11}$$

- 시장청산(market clearing) 조건

· 가계와 기업은 최적화에 의해 생산과 요소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며, 시장청산은 최적화 문제는 행위자(agent)의 의사결정 및 생산품 및 요소 가격에 영향을 미침

· 이때의 시장청산을 위한 조건은 식(12)와 같음

$$X_i = Z_i, \forall\ i \tag{12}$$

$$\sum_j F_{h,j} = F_h, \forall\ h$$

$$p_i^z = p_i^x, \forall\ i$$

- 1번째 시장청산 조건은 수요와 공급양의 일치를 의미하며, 2번째 조건은 기업의 h요소의 합은 개별 요소의 합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

- 끝으로 3번째 시장청산 조건은 기업의 공급 가격과 가계의 수요 가격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

- 모형체계

· 생산물과 요소의 수요 및 공급 방정식, 시장청산 조건은 식(13)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유도

· 따라서, 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 경제의 일반균형해의 도출이 가능

$$
\begin{array}{ll}
X_i = \dfrac{\alpha_i}{p_i^x}\sum_h p_h^f F_h & : i\text{생산물에 대한 수요함수} \\
Z_j = b_j \prod_h F_{h,j}^{\beta h,j} & : j\text{생산물에 대한 공급함수} \\
F_{h,j} = \dfrac{\beta_{h,j}}{p_h^f} p_j^z Z_j & : j\text{기업의 } h\text{요소에 대한 수요함수} \\
X_i = Z_i, \forall\ i & : \text{시장청산 조건 1} \\
\sum_j F_{h,j} = F_h, \forall\ h & : \text{시장청산 조건 2} \\
p_i^z = p_i^x, \forall\ i & : \text{시장청산 조건 3}
\end{array}
\qquad (13)
$$

2. 문화시설 도입 및 확충 필요성

1) 분석결과

❍ 전체 지자체 중 1인당문화관광예산 및 시설수로 구분된 47개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순서화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지역의 1인당문화관광예산 및 지역특성을 적용하여 국비지원과 지역규모에 의한 차이를 실증 분석

-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설명변수를 통해 예측된 확률의 오차가 낮아지는 정도인 Gamma(Goodman-Kruskal Gamma), Gamma를 총쌍(pair)으로 나눔으로써 확률의 과대평가 정도를 낮춘 Sommers' D와 Kendall's Tau-a와 C로 구분하여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제시
- 더불어,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를 R-square와 Max rescaled R-square로 제시하여 공공문화기반시설 만족도 결정요인을 파악

❍ 순서화로짓모형 결과로부터 다른 설명변수들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연계함수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의 도출이 가능

- 이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대비하여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비율($\mathrm{P}rob(Y=1)/(1-\mathrm{P}rob(Y=1)) = \prod_{k=1}^{K} e^{\beta_k X_k}$, Odds)로 추정된 파라미터와 평균을 활용하여 산출
- Odds의 활용은 추정된 값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변화되는 방향성을 제시
-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성별, 나이, 소득, 편의성, 불편해소노력, 프로그램수준, 요금, 접근편리성, 홍보 및 안내가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

· 즉, 소득을 제외한 성별, 나이, 편의성, 불편해소노력, 프로그램수준, 요금, 접근편리성, 홍보 및 안내는 1%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10%이내에서 유의함

· 따라서, 문화시설의 이용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소득, 편의성, 불편

해소노력, 프로그램수준, 요금, 접근편리성, 홍보 및 안내가 확보될 경우에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는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문화시설의 공급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한 시설 공급이 필요한 특성을 내포한 것을 의미함

- 여성에 대한 남성의 비율(Odds)이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만족도가 낮다고 인식한 경우보다 높다고 인식할 경우 약 1.39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만족도에 영향

· 이는 남성에 대한 시설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별 영향을 고려한 문화시설 공급이 필요한 것을 의미

- 연령별로는 주민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의 증가에 따른 만족도 감소 성향에 따라 단편적인 시설 공급이 아닌 생애주기별 문화시설 공급의 필요성 내포

- 쾌적성 측면의 편의성, 친절성 측면의 불편해소노력, 질적 측면의 프로그램 수준과 요금, 편리성 측면의 접근성과 홍보 및 안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가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각각 1.696, 1.710, 1.395, 1.662, 1.458, 1.334배 높은 것으로 분석

· 즉, 편의성 확보, 불편해소 노력 확보, 프로그램 수준 구비, 접근성 확보, 홍보 및 안내 활성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단순 시설 공급을 통한 문화시설의 공급이 아닌 질적 측면이 강조된 문화시설 공급 필요성 내포

- 따라서,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여성보다는 남성,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 쾌적함과 친절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접근성 등 홍보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경우에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8> 이용자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구분		Estimate	Odds	Mean	Pr > ChiSq
상수	$Constant$	−3.275	0.037		
성별	X_1	0.335***	1.398	0.538	0.003
나이	X_2	−0.014***	0.986	29.206	0.002
소득	X_{31}	0.282	1.325	0.228	0.270
	X_{32}	0.431*	1.539	0.230	0.089
	X_{33}	0.367	1.444	0.221	0.143
	X_{34}	0.359	1.432	0.260	0.149
편의성	X_4	0.528***	1.696	3.625	<.0001
불편해소노력	X_5	0.537***	1.710	3.401	<.0001
프로그램수준	X_6	0.333***	1.395	3.343	0.001
적정프로그램제공	X_7	0.075	1.078	3.135	0.381
요금	X_8	0.508***	1.662	3.452	<.0001
접근편리성	X_9	0.377***	1.458	3.254	<.0001
홍보 및 안내	X_{10}	0.288***	1.334	2.835	<.0001
지역특성	X_{111}	0.477	1.611	0.064	0.834
	X_{112}	0.182	1.199	0.383	0.936
	X_{113}	0.338	1.402	0.552	0.881
1인당예산	X_{121}	−14.729	0.000000401	0.026	0.958
	X_{122}	−15.248	0.000000239	0.004	0.957
	X_{123}	−12.92	0.000002448	0.004	0.964
시설수	X_{131}	14.523	2,028,688.33	0.027	0.959
	X_{132}	12.429	249,870.98	0.006	0.965
	X_{133}	13.114	495,736.59	0.001	0.963
R−square		0.382	Max rescaled R−square		0.423
Somers' D		0.599	Gamma		0.601
Tau−a		0.382	C		0.799

주1)***,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 이하를 의미

주2) 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X_{31}(150만원 이하~200만원), X_{32}(200만원~300만원), X_{33}(300만원~400만원), X_{34}(400만원~500만원 이상), 지역특성은 지역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따라 X_{111}, X_{112}, X_{113}으로 구분, 1인당문화관광예산과 시설수는 상중하에 따라 각각 X_{121}(9만원 이하), X_{122}(19만원 이하), X_{123}(28만원 이하)와 X_{131}(11개 이하), X_{132}(21개 이하), X_{133}(29개 이하)으로 구분

❍ 공공문화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고려된 소득, 지역특성, 1인당문화관광예산, 시설수의 연계함수에 대한 한계효과는 소득이 200만원~300만원일 경우,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의 비율이 1.5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적으로는 특별시와 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만족도가 높은 비율이

각각 1.611배, 1.40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광역시보다는 서울과 나머지 일반 도에서의 만족도가 전반적인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1인당문화관광예산과 시설수의 규모는 인구대비 배분된 문화관광예산이 19만원~28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전반적인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 시설수는 공급 시설 절대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전반적인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기준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

❍ 분석결과로부터 공공문화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단위변화에 따른 확률(사건의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 도출

- 사건의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독립변수의 1계 편미분 값인 $\frac{\partial \mathrm{Prob}(Y=n)}{\partial X_k}$로 $\frac{\partial}{\partial X_k}\left[F(\mu_n-\sum_{k=1}^{K}\beta_k X_k)-F(\mu_{n-1}-\sum_{k=1}^{K}\beta_k X_k)\right]=$ $=\left[f(\mu_n-\sum_{k=1}^{K}\beta_k X_k)-f(\mu_{n-1}-\sum_{k=1}^{K}\beta_k X_k)\right]\beta_k$에 의해서 산출
- 반면, 더미변수로 구성되어있는 소득, 지역특성, 1인당문화관광예산, 시설수에 대한 한계효과는 과대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분석에서는 배제함
- 공공문화기반시설의 결정요인인 성별, 소득, 편의성, 불편해소노력, 프로그램수준, 적정프로그램제공, 요금, 접근편리성, 그리고 홍보 및 안내는 각각의 단위가 1단위 변화함으로써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개별 독립변수의 만족 정도가 상승함으로써 전반적인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매우 불만’ 정도는 감소하고, ‘매우 만족’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반면, 주민의 나이는 나이가 증가함으로써 긍정적 선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연령대를 대상으로는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순서화로짓모형의 분석결과와 같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는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대상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설특성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이중 개별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함으로써 전반적인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요인들은 불편해소노력, 편의성, 요금, 접근성, 성별, 프로그램수준, 홍보 및 안내, 적정프로그램제공, 나이 순으로 나타남

<표 Ⅳ-9> 변수별 한계효과 결과

구분		Prob (Y=1) 매우 불만	Prob (Y=2) 대체로 불만	Prob (Y=3) 보통	Prob (Y=4) 대체로 만족	Prob (Y=5) 매우 만족
성별	X_1	−0.07%	−1.16%	−6.87%	**7.09%**	1.02%
나이	X_2	0.00%	0.06%	0.29%	**−0.32%**	−0.04%
편의성	X_4	−0.10%	−1.69%	−10.71%	**10.73%**	1.76%
불편해소 노력	X_5	−0.10%	−1.71%	−10.87%	**10.89%**	1.80%
프로그램 수준	X_6	−0.07%	−1.16%	−6.82%	**7.04%**	1.01%
적정프로그램 제공	X_7	−0.02%	−0.29%	−1.55%	**1.66%**	0.20%
요금	X_8	−0.10%	−1.64%	−10.31%	**10.37%**	1.68%
접근편리성	X_9	−0.08%	−1.28%	−7.71%	**7.91%**	1.17%
홍보 및 안내	X_{10}	−0.06%	−1.02%	−5.92%	**6.15%**	0.86%
소득	X_{31}	−0.06%	−1.00%	−5.78%	**6.01%**	0.83%
	X_{32}	−0.09%	−1.43%	−8.80%	**8.95%**	1.37%
	X_{33}	−0.08%	−1.26%	−7.52%	**7.72%**	1.13%
	X_{34}	−0.07%	−1.23%	−7.35%	**7.56%**	1.10%
지역특성	X_{111}	−0.09%	−1.56%	−9.70%	**9.80%**	1.55%
	X_{112}	−0.04%	−0.67%	−3.73%	**3.94%**	0.51%
	X_{113}	−0.07%	−1.17%	−6.92%	**7.14%**	1.03%
1인당예산	X_{121}	99.74%	−4.21%	−40.89%	**−51.98%**	−2.65%
	X_{122}	99.74%	−4.22%	−40.89%	**−51.98%**	−2.65%
	X_{123}	99.65%	−4.14%	−40.89%	**−51.98%**	−2.65%

시설수	X_{131}	−0.25%	−4.23%	−40.89%	**−51.98%**	97.35%
	X_{132}	−0.25%	−4.23%	−40.89%	**−51.96%**	97.33%
	X_{133}	−0.25%	−4.23%	−40.89%	**−51.97%**	97.34%

❍ 또한, 누적확률분포함수에서 확률값의 도출을 활용하여 소득, 지역, 1인당관광문화예산, 시설수에 대한 차이로 인해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도출

-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의 수준은 200만원~300만원인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일 때보다 높은 소득인 경우에 시설 이용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
-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지역에서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긍정적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별 설명변수에 대한 확률 예측값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 또한, 지역별로의 시설의 총량에 대한 확률 예측값은 시설 공급의 모든 경우에서 시설 이용 만족도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역별 1인당문화관광예산이 증가할수록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특성은 지역의 인구당 문화관광예산의 변동성을 고려한 것이며, 1인당 문화관광예산이 증가하는 것을 지역별로 투영하여 인구가 적은 지역에 문화시설이 공급될 경우에는 만족도가 낮게 형성되는 특성을 의미
  - 즉, 지역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문화시설이 아닌 수혜성 문화시설의 공급은 실질적인 효용 및 만족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실질적인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 및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의미
- 따라서, 예산의 확충보다는 실효성있는 시설 확보가 보다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10> 변수별 확률의 예측값

구분		Prob (Y=1) 매우 불만	Prob (Y=2) 대체로 불만	Prob (Y=3) 보통	Prob (Y=4) 대체로 만족	Prob (Y=5) 매우 만족
소득	X_{31}	0.263%	4.463%	42.051%	**50.714%**	2.509%
	X_{32}	0.227%	3.870%	38.983%	**54.019%**	2.901%
	X_{33}	0.242%	4.112%	40.292%	**52.627%**	2.728%
	X_{34}	0.244%	4.146%	40.467%	**52.439%**	2.705%
지역특성	X_{11}	0.206%	3.525%	36.979%	**56.101%**	3.189%
	X_{11}	0.276%	4.673%	43.036%	**49.623%**	2.393%
	X_{11}	0.236%	4.027%	39.842%	**53.108%**	2.786%
1인당예산	X_{12}	**99.974%**	0.025%	0.001%	0.000%	0.000%
	X_{12}	**99.984%**	0.015%	0.001%	0.000%	0.000%
	X_{12}	**99.841%**	0.151%	0.008%	0.000%	0.000%
시설수	X_{13}	0.000%	0.000%	0.000%	0.003%	**99.997%**
	X_{13}	0.000%	0.000%	0.001%	0.023%	**99.976%**
	X_{13}	0.000%	0.000%	0.000%	0.012%	**99.988%**

2) 함의

❍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쾌적성 측면, 친절도 측면, 질적 측면, 활용 측면, 편리성 측면, 수준 및 중요도 측면으로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

- 그 결과, 쾌적성(편의성), 친절도(불편해소노력), 질적측면(프로그램 수준, 요금), 편리성(접근편리성, 홍보 및 안내)가 주요하게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분석
- 또한, 소득 정도, 지역특성, 1인당문화관광예산, 그리고 지역으로의 시설 공급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결과, 소득, 지역특성, 시설수는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당문화관광예산은 부정적인 선호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 예산 확대가 아닌 예산을 시설과 연동시켰을때 이용만족도의 증대가 견인될 것으로 판단됨

3. 문화부문의 주민행복 기여 분석

1) 분석결과

❍ 생활권의 가장 큰 의의는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일상생활에 근거한 권역을 설정·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에 관련된 서비스를 생활권 단위로 공동 공급·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음

- 따라서 생활권의 구성 전후간에 각종 삶의 질 지표의 격차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생활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볼 수 있음

❍ 지표별 지역격차는 객관적 지표에 대한 Gini계수로 분석하였으며 229개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격차는 평균 0.32,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격차는 평균 0.21로 나타나 생활권을 형성하여 시설을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지역격차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니계수는 $G=\frac{\Delta}{2\mu}$, $\Delta=\frac{1}{N(N-1)}\sum_{i=1}^{n}\sum_{j=1}^{n}|Var_i-Var_j|$을 활용하였으며, 이때 $\mu=$ 평균, $Var_{i,j}=i,j$번째 변수, $N=$ 변수 개수를 의미
- 지니계수의 격차는 0부터 1까지이며, 1에 점근할수록 상대적인 격차가 큰것을 의미하여 해당 지표별 공급이 서로 상이함을 의미
- 이와 같은 삶의 질 지표의 격차 감소효과는 생활권이 하나의 행정구역과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각종 삶의 질 서비스의 대체 또는 보완을 통해 서비스 공급이 균등화되는 경우에 가능한 결과임
- 생활권 구성에 따른 지역격차 완화효과를 생활권 유형별로 보면 생활권 전체의 격차에 비해 유형별 격차가 더욱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각 유형별로 비교적 동질적이고 유사한 지자체들이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
- 반면, 생활권의 유형간 비교에서는 유형간 지역격차의 완화효과가 지표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11> 삶의 질 객관적 지표별 격차분석 결과

영역	부문	지표	지자체	생활권			
				전체	도시	도농연계	농어촌
생활권 기반	생활인프라	도로율	0.422	0.217	0.189	0.189	0.202
	주거	1인당 주거면적	0.280	0.159	0.111	0.160	0.162
		노후주택비율	0.185	0.161	0.174	0.181	0.132
		주택보급률	0.043	0.025	0.019	0.022	0.025
	환경	천인당 폐수배출업소	0.432	0.273	0.177	0.193	0.296
		1인당 쓰레기배출량	0.826	0.805	0.875	0.740	0.731
지역경제·고용창출	소득	1인당 GRDP	0.370	0.196	0.227	0.221	0.119
		1인당 지방세	0.312	0.142	0.120	0.200	0.127
	고용	고용율	0.048	0.047	0.036	0.053	0.051
		천인당 사업체수	0.155	0.057	0.032	0.048	0.073
교육		천인당 사설학원수	0.222	0.170	0.120	0.099	0.151
		천인당 학교수	0.363	0.244	0.190	0.245	0.136
문화·생태	**문화여가**	**천인당 문화시설수**	**0.446**	**0.285**	**0.168**	**0.268**	**0.276**
	생태	공원면적비율	0.758	0.548	0.449	0.485	0.419
		1인당 녹지면적	0.587	0.292	0.309	0.167	0.308
복지·의료	복지	천인당 복지시설수	0.444	0.263	0.270	0.213	0.183
	의료	천인당 병상수	0.331	0.232	0.169	0.185	0.310
		천인당 의료인수	0.319	0.210	0.178	0.306	0.137
기타	지역활력	고령화율	0.255	0.196	0.165	0.178	0.111
		경제활동인구비율	0.045	0.035	0.024	0.029	0.028
	안전	천인당 화재발생건수	0.308	0.214	0.186	0.134	0.140
		천인당 교통사고발생건수	0.190	0.135	0.097	0.134	0.126
	가족 및 공동체	천인당 이혼건수	0.092	0.073	0.045	0.079	0.090
		10만명당 자살건수	0.179	0.122	0.119	0.099	0.091
평균			0.32	0.21			

❍ 삶의질에 미치는 결정요인의 도출

- 기존 분석방법 (OLS 등)에 의한 방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일치성이 100%로 지수화에 따른 변수간 높은 연계성으로 인하여 분석이 불가능
- 따라서, 지역주민 행복도를 4구분으로 분석을 시행하여 변수간 공선성을 최소화 시킴[2)]
- 기존 OLS의 분석결과 추정치가 아닌 순서화 로짓모형의 odds에 의한 상대적인 정도 제시
- 따라서, 모든 변수에서의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할 때 삶의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12>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결과

구분	Estimate		Odds	Mean	Pr > ChiSq
상수항	45.69640	***	7.01E+19	1	0.0003
생활인프라	−5.03340	***	0.00652	−0.00095	0.0016
주거	6.62970	***	757.25496	0.00113	0.0002
교육	−7.69930	***	0.00045	−0.00050	0.0003
문화여가	**−4.38470**	*******	**0.01247**	**−0.00091**	**0.0014**
경제	−6.39410	***	0.00167	−0.00121	0.0003
사회	−6.18020	***	0.00207	−0.00156	0.0004
의료	−5.98060	***	0.00253	−0.00068	0.0002
복지	−6.25400	***	0.00192	−0.00103	0.0003
환경	−6.38300	***	0.00169	−0.00163	0.0002
안전	−6.19750	***	0.00203	−0.00076	0.0006
시민의식	−5.84590	***	0.00289	−0.00261	0.0004
삶의만족	−4.82880	***	0.00800	−0.00224	0.0002
10만이하	−1.17170		0.30984	0.41048	0.6609
30만이하	−0.82990		0.43609	0.31004	0.7682
50만이하	−1.71620		0.17975	0.17467	0.6068

주)***,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 이하를 의미

[2)] 전체 대상 지역 229개는 1등급 58개,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각각 57로 구성을 하였으며, 등급의 기준은 순위로 분석하였다.

❍ 전체 지자체 중 지역주민행복도의 결정요인을 순서화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실증 분석

- 지역주민행복도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은 순서화 로짓모형 결과로부터 다른 설명변수들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연계함수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로 도출
- 이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대비하여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비율($\text{Pr}ob(Y=1)/(1-\text{Pr}ob(Y=1))=\prod_{k=1}^{K}e^{\beta_k X_k}$, Odds)과 같음
- 이 경우 주거에 의한 만족도 의해 크게 행복도는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규모에 따른 만족도는 10만 이하와 30만이하일 때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 또한, 순서화 로짓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로부터 지역주민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단위 변화에 따른 확률(사건의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단위 변화에 따른 확률(사건의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이 도출됨

- 주거를 제외한 11개 분야에서의 만족도가 상승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행복도가 증가함으로써, 지역주민 행복도 지역으로 전반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최대 9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규모별로는 10만 이하와 50만 이하의 인구 규모에서 지역주민 행복도가 높아지는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도시 위주의 도시로 지역 인프라 및 환경과 밀접한 지역 또는 100만 이하의 대도시로 지역 서비스 공급이 우월한 지역에서의 지역주민 행복도가 높은 형태로 지역주민 행복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Ⅳ-13> 변수별 한계효과 결과 및 순위

구분	Prob(Y=1) 매우 높음	Prob(Y=2) 대체로 높음	Prob(Y=3) 높음	Prob(Y=4) 대체로 낮음
생활인프라	0.00000	0.99454	0.00546	–
주거	0.00000	0.00157	0.99843	–
교육	0.00000	0.99962	0.00038	–
문화여가	**0.00000**	**0.98961**	**0.01039**	–
경제	0.00000	0.99859	0.00141	–
사회	0.00000	0.99826	0.00174	–
의료	0.00000	0.99788	0.00212	–
복지	0.00000	0.99838	0.00162	–
환경	0.00000	0.99858	0.00142	–
안전	0.00000	0.99829	0.00171	–
시민의식	0.00000	0.99757	0.00243	–
삶의만족	0.00000	0.99331	0.00669	–
10만이하	0.00000	0.57580	0.42420	–
30만이하	0.00000	0.49094	0.50906	–
50만이하	0.00000	0.70058	0.29942	–
50만이상	0.00000	0.29606	0.70394	–

생활인프라	9	9	4	–
주거	12	12	1	–
교육	1	1	12	–
문화여가	**11**	**11**	**2**	–
경제	2	2	11	–
사회	6	6	7	–
의료	7	7	6	–
복지	4	4	9	–
환경	3	3	10	–
안전	5	5	8	–
시민의식	8	8	5	–
삶의만족	10	10	3	–
10만이하	2	2	3	–
30만이하	3	3	2	–
50만이하	1	1	4	–
50만이상	4	4	1	–

2) 함의

- 지역주민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주거, 문화여가, 삶의만족 순으로 행복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주거 공급과 더불어 문화향유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됨
  - 특히, 주거, 문화여가, 대도시에서의 행복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과 문화환경이 조성된 대도시 위주에서의 주민행복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행복도 증가에 미치는 구성요인들의 기여는 기본적인 수준을 충족할 경우에 행복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부문의 만족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삶의질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대부분의 개별 지표에서의 한계효과가 한단위 증가할 경우의 행복도 증가 역시 이루어짐
  - 더불어, 문화여가의 경우 타 부문에 비해 만족도가 증가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Y=3(높음)의 경우에도 한계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문화여가의 기여정도는 주거와 함께 기본적인 향유에 대한 만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민의 실질적 일상이 이루어지는 생활권 단위로 각종 공공서비스를 공급·이용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비스 공급의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통해 체감적으로 삶의 질과 행복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 따라서, 시설 공급에 의해서 지역격차 완화 등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의도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 자율과 협력에 기초한 공동의 노력과 이에 상응하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4. 문화균형특별교부세 효과

1) 분석전제

- ❍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지원을 통한 문화시설 확충은 다음과 같은 전제에 의해서 효과를 산출함
  -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지원은 가구의 소비세 증감과 정부지원금의 증감으로 구성
  - 소비세 증가와 정부지원금 감소는 문화균형특별교부세 지원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와 상반되게 문화균형특별교부세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세 감소와 정부지원금 증가를 의미
  - 소비세와 정부지원금의 개별적인 영향을 고려하지만, 극단치를 고려하기 위하여 소비세와 정부지원금 증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반영
- ❍ 산업 및 지역 구분
  - 국가를 구성하는 산업은 1, 2, 3차 산업으로 구분
  - 더불어, 분석을 위한 산업구조는 1,2차 농림어업 및 제조업에 대한 산업1과 3차 서비스산업 산업2로 구성
  - 지역은 국가 전체로 한정
- ❍ 가계, 산업, 정부 3개 기관으로 구성
  -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생산, 소비, 저축, 투자, 수입, 지출, 수출, 수입 반영
  - 가격과 양은 시장균형에 의해서 결정
  - 더불어, 시장균형에 의한 시장청산 적용
- ❍ 정부 투자에 의한 지역경제 변수 변동요인 고려
  - 정부저축(투자)에 의해 자원투자를 통한 시설 증대
  - 시설 지원 및 증대로 인한 관련 산업 증대
  - 관련 산업 증대로 인한 생산 증대
  - 생산 증대로 인한 가구 수입 및 소비 변화

- 가구 수입 증대로 인한 정부저축(투자) 변화 선순환 제시

<그림 Ⅳ-6> 정부투자에 의한 지역경제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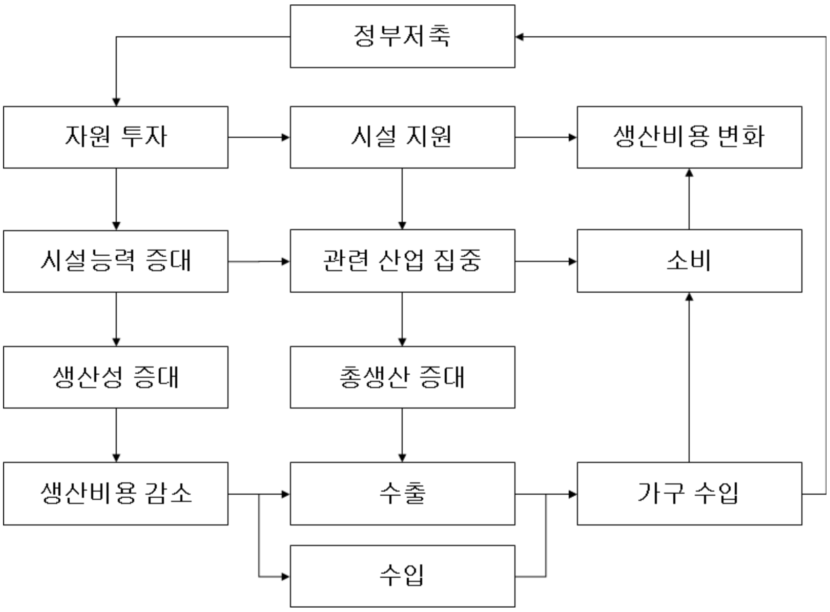
정부저축
자원 투자
시설 지원
생산비용 변화
시설능력 증대
관련 산업 집중
소비
생산성 증대
총생산 증대
생산비용 감소
수출
가구 수입
수입

❍ 기관간 역할을 고려한 사회계정행렬이 구성

- 산업, 생산요소, 가계, 정부, 해외, 관세, 자본으로 고려
- 수입과 지출의 균형 설정

<표 Ⅳ-14> 국가 사회계정행렬

구분		산업		생산요소		가계	정부		해외	관세	자본
		1,2차	3차	노동	자본			보조금			
산업	1,2차	중간재		임금	자본	소비	소비		무역적자		
	3차										
생산요소	노동									수출	
	자본										
가계		임금, 자본						보조금			
정부부문		간접세				소득세					부족분
	보조금										
해외											
관세		수입									
자본		감가상각				가계저축	정부저축				

❍ 증감분의 고려

- 문화균형특별교부세가 운영되는 경우를 간접적으로 고려
- 각각의 증감분은 1% 증감으로 반영
- 따라서, % 증감에 따른 영향의 산출로 반영

<표 Ⅳ-15> 문화균형특별교부세 시나리오

구분	(1)	(2)	(3)	(4)	(5)	(6)
소비세	↑	↓				
정부지원금			↑	↓		
자본확충					↑	↓

❍ 최종결과물 산출

-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반영에 의한 영향은 산업별 가격, 소비자가격, 국내수요, 수출, 수입, 효용으로 반영

<표 Ⅳ-16> 연산일반균형모형 분석결과

구분	1,2차	3차
가격	1.00	1.00
생산물가격	1.00	1.00
소비자가격	1.00	
산출물(조원)	1,162.77	1,233.56
국내수요(조원)	815.57	1,167.72
수출(조원)	347.20	65.84
수입(조원)	351.92	61.30
복합재(조원)	1,167.49	1,229.02
효용	295.20	

2) 분석결과

❍ 소비세 증감

- 문화균형특별교부세를 통한 시설 공급의 확대는 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해야할 소비세를 감소
- 이에 따라 문화균형특별교부세를 통해 시설을 공급할 경우를 소비세 증감으로 제시
- 문화균형특별교부세를 통해 소비세가 감소할 경우에는 1,2차 산업의 가격의 안정화, 3차 산업의 국내수요가 증진되며, 3차 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산업의 증대가 견인됨
- 더불어, 소비세 감소로 인한 소비증대로 주민의 효용은 0.1964% 증진되어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 Ⅳ-17> 소비세 증감 분석결과(시나리오 1, 2)

구분	시나리오(1) 소비세 증가		시나리오(2) 소비세 감소	
	1,2차	3차	1,2차	3차
가격	0.0140%	0.0142%	−0.0140%	−0.0142%
생산물가격	0.0141%	0.0141%	−0.0141%	−0.0141%
소비자가격	0.0141%		−0.0141%	
산출물	0.0000%	0.0000%	0.0000%	0.0000%
국내수요	0.0030%	−0.0027%	−0.0030%	0.0027%
수출	−0.0070%	0.0471%	0.0070%	−0.0471%
수입	0.0121%	0.0022%	−0.0121%	−0.0022%
복합재	0.0057%	−0.0024%	−0.0057%	0.0024%
효용	−0.1964%		**0.1964%**	

❍ 정부지원금 증감

-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은 시설 공급의 변화로 귀결되며, 이는 국가 보조 지원금의 증감으로 제시가 가능
-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으로 인한 지원금의 증가는 1, 2, 3차 산업의 가격을 감소시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지원금의 증가로 인해 연계사업의 성장은 감소하나, 상대적인 수출증가 효과가 발생하여 상호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지원금 증가로 인한 소비증대로 주민의 효용은 0.0958% 증진되어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 Ⅳ-18> 정부지원금 증감 분석결과(시나리오 3, 4)

구분	시나리오(3) 지원금 증가		시나리오(4) 지원금 감소	
	1,2차	3차	1,2차	3차
가격	-0.0087%	-0.0088%	0.0087%	0.0088%
생산물가격	-0.0087%	-0.0088%	0.0087%	0.0088%
소비자가격	-0.0088%		0.0088%	
산출물	0.0000%	0.0000%	0.0000%	0.0000%
국내수요	-0.0019%	0.0000%	0.0019%	0.0000%
수출	0.0044%	0.0000%	-0.0044%	0.0000%
수입	-0.0075%	-0.0030%	0.0075%	0.0030%
복합재	-0.0036%	-0.0002%	0.0035%	0.0002%
효용	0.0958%		-0.0958%	

❍ 자본확충 지원 증감

-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으로 인해 산업간 자본 확충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해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으로 인한 자본 확충 지원 증감에 대한 고려할 경우에는 자본 지원 증가에 비해 모든 사업의 가격은 상승하며 소비재가격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차 산업의 산출물은 증가하여 부가가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3차 산업의 연계산업 역시 성장되는 것으로 분석됨
- 더불어, 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 증가로 주민의 효용은 0.3221% 증진되어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으로 인해 주민 효용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 Ⅳ-19> 자본확충 지원 증감 분석결과(시나리오 5, 6)

구분	시나리오(3) 자본확충 증가		시나리오(4) 자본확충 감소	
	1,2차	3차	1,2차	3차
가격	1.1700%	2.1618%	−1.4028%	−2.3898%
생산물가격	1.1776%	2.1498%	−1.4044%	−2.3863%
소비자가격	1.6786%		−1.9090%	
산출물	−0.8636%	0.4098%	0.9102%	−0.4397%
국내수요	−0.6193%	−0.0014%	0.6022%	0.0000%
수출	−1.4422%	7.7875%	1.6263%	−8.1410%
수입	0.1347%	0.7271%	−0.3198%	0.0000%
복합재	−0.3934%	0.0346%	0.3222%	0.0000%
효용	0.3221%		−0.1996%	

3) 함의

-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도입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문화균형특별교부세는 지방분권시대의 지역 자치적인 문화시설 운영이라는 점과는 상반될 수 있으나, 지역의 재정력 차이 및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선투자로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음
  - 반면,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도입은 시설 확충을 통해 문화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킴
  - 더불어, 이용자의 만족 증가는 문화여가 만족을 더불어 증가시키며, 이는 국민 행복도의 증가를 유발시킴
-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을 통한 수요변화는 소비세 감소, 지원금 증가, 자본확충 증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으로 가격의 감소와 연계산업의 증가가 견인됨
  - 특히,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을 통한 자본의 확충은 소비 증대를 통한 가구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도입은 국민 행복도를 증가시키며, 이는 수요변화 → 가격변동 → 효용증가 → 시설확충 → 문화시설이용자만족 증가 → 문화여가만족도 증가 → 행복도 증가로 나타남
  - 만족도 및 효용 주체간 변화에 대한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Ⅳ-7>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에 따른 영향관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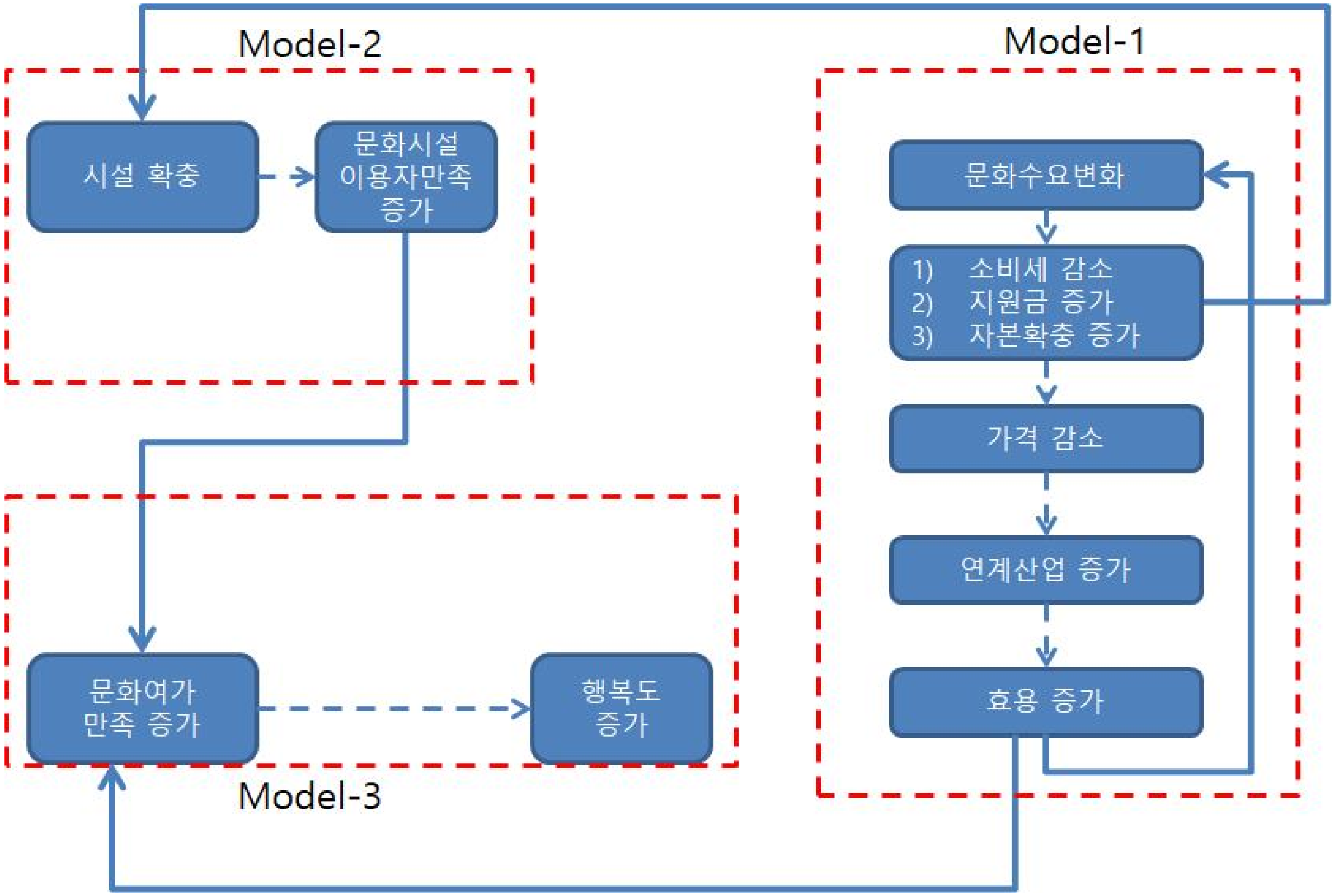
Model-2
시설 확충
문화시설 이용자만족 증가
Model-1
문화수요변화
1) 소비세 감소
2) 지원금 증가
3) 자본확충 증가
가격 감소
연계산업 증가
효용 증가
문화여가 만족 증가
행복도 증가
Model-3

V. 법령개정방안

1. 현 법령 검토
2.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으로 인한 법령개정방안
3. 문화균형교부세 훈령 전문(안)

1. 현 법령 검토

1) 교부세 관련법령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2.23.>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12.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1.1.>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③ 삭제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1.1.>[전문개정 2009.2.6.]

- 문화균형특별교부세 재원에 대한 명시 필요
- 특별교부세 교부 기준 중 문화수요 및 문화향유를 위한 국민기본권 명시를 암묵적으로 표현한 국가적 장려사업에 대한 기제시
- 문화균형특별교부세 교부 항목 및 기준 신설 필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2.>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1. 행정·재정 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2. 주민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교부세는 해당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0.]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분야: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③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비중으로 한다. 1.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100분의 40 2.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100분의 40 3. 재정여건: 100분의 20 ④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교부방법,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5.6.22.]

- 제9조의2항의 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중 문화균형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제시 미비로 인한 대상 교부기준 필요

-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교부기준 제시 외 제10조5호 신설을 통한 문화균형특별교부세 교부 기준 제시 필요

2) 문화 관련법령

□ 문화기본법/시행령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경제사회지리적 낙후 지역에 대한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지원 기설정
- 더불어,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명시

❍ 반면, 삶의질 향상을 위한 조성 활용 계획 있으나 미비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지정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2.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3. 문화유산·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4.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5.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에 관한 조사·연구 6.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련 정책정보의 분석·제공 사업 7.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및 홍보 8.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련 정책연구 성과와 연계된 교육사업 9.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문화정보화 사업의 지원 2. 문화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무 3. 문화정보화 추진 및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단체에 대한 문화정보화 전문기술 지원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대국민 통합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온라인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7. 통계시스템을 통한 문화 분야 각종 조사 결과와 통계정보의 통합관리 8. 그 밖에 문화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담기관 설립에 대한 시행령 존재, 그러나 시설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지역문화진흥법]

제1장 총칙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문화환경 취약지역 선정으로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법령 명시
  - 기본원칙에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 추구에 대한 항목 구비
  - 더불어, 지역문화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과 함께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대한 항목 제시
- ❍ 지역에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령 부재
  - 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등 추가적인 논의 미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

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시행계획 및 시·군·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4. 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

- ❍ 동법 시행령 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시행령 부재
- ❍ 총괄 지원에 대한 시행령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부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동법 시행규칙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부재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6.]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제25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세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2.6.]

제26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 문화 장기기본계획 설정에 대한 명시

-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한 명시, 삶의질 개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법령 부재
- 더불어, 문화산업 기반 조성에 대한 명시, 그러나, 집적화 외에 지역에서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부재

❍ 문화산업단지에 대한 기재, 그러나 조성 지원에 대한 구체적 명시 부재

- 문화의 형평한 권리 확보를 위한 지역별 문화시설 공급에 대한 명시 필요

□ 스포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3.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의 공용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문화시설 중 스포츠시설에 대한 지정 요건 제시
- ❍ 반면, 지정 후 시설 공급에 대한 사항 미비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운영비의 지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진흥시설의 지원에 대한 항목 제시
- ❍ 반면, 재원에 대한 항목은 미비되었으며, 스포츠단 창단에 대한 출자출연 항목만 제시

□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

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2. 2. 17., 2014. 12. 23., 2015. 3. 27., 2016. 5. 29., 2017. 12. 19.>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 <2014. 12. 23.>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23., 2017. 12. 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

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④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3. 경륜·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4.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5.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적정 확보 및 이용에 대한 근거 제시

- 더불어,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제시
- 반면, 시설 설치를 통한 확보 관련 구체적인 명시 부재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으로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 제시

❍ 전반적인 시설 확충에 대한 근거 및 예산 활용 근거는 제시가 되어 있으나 지속 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미비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11. 4. 5.> 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제목개정 2007. 7. 19., 2011. 4. 5.]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 관광지 및 관광단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에 대한 명시
  - 관광시설에 대한 타인 경영 및 처분 및 위탁 경영에 대한 근거 제시
  - 또한,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등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 관련 사업에 대한 명시 및 근거 제시
  - 더불어,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관광개발기본계획 등에 대한 명시
- 반면, 지속성장을 위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명확한 근거 및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미비

□ 콘텐츠산업 진흥법(동법 내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장 총칙

제8조(재원의 확보)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3조(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에 대한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동 분야의 창업 및 성장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항목 명시
- 반면, 재원 확보를 위한 명시는 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의 구체적인 제시 미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해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1조 및 42조에 기금 및 조성에 대한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나, 지속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비

□ 문화예술진흥법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17.]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공간 설치 명시

-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명시, 그러나, 지원 체계 미비

❍ 더불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별 시설 공급 미비

-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명시되었으나, 시설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미비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문화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조성에 대한 사업 근거 수립
- ❍ 반면, 시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항목 미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구분, 적용범위, 육성, 등록, 업무, 설립 계획 승인, 관리 운영, 평가지도 등에 관한 법령 제시
- ❍ 반면, 시설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미비

3) 기타 유사 관련법령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내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절차, 방법, 대상사업을 지방교부세 시행령과 연계하여 제시
- ❍ 반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내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교부기준, 교부절차, 교부방법 마련 부재
- ❍ 지역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대상사업 설정 필요

[예시]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17.7.26., 2017.12.27.>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1. 중점사업: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2. 재량사업: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② 시·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12.30.>[전문개정 2017.4.18.]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4.18.]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30.>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30.>[전문개정 2017.4.18.]

-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교육세법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해 교육학예, 의무교육, 의무교육 외 관련 경비 지원 명시
- 기준재정수요 대비 기준재정수입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며, 교육관련 국가 필요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한 역할 제시
- 따라서, 국가의 필요성과 지역에서의 수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교부금 교부에 대한 의의 정립

2.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으로 인한 법령개정방안

1) 법령 제ㆍ개정 필요성

- 국민의 문화환경 향유 기본권 정립
  - 국민이 향유해야할 문화환경 부문의 기본권 제시
  - 대도시 및 상대적인 발전 지역 대상 문화시설 공급 외에 소도시 및 상대적으로 저발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시설 공급에 대한 법령 근거 기제시
  - 특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의해 문화향유를 위한 방향성 제시가 이루어짐
  - 반면, 필요한 지원 및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음
-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근거 설정
  - 균등한 시설공급을 위한 취약지역 선정을 지역문화진흥법(2장 제9조)

으로 명시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

- 특히,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지정
- 반면, 총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는 생략됨

❍ 문화산업진흥시설 집적으로 인한 문화산업 기반 조성

- 문화산업단지 등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중적인 입주를 통해 문화산업의 융성화 기반 조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수입으로 문화산업단지 조성 촉진

❍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문화향유를 보조적인 역할 설정으로 문화를 산업화할 수 있는 근거 설정

- 국민들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지원센터의 업무 분야를 설정
-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교육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는 문화향유, 공급자에게는 문화 공급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적시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및 지원 활동 예산 지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으로 인해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계승 및 발전, 후생복지 사업, 문화시설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기제시
- 따라서, (가칭)문화균형교부세 추가 공급으로 인해 후생 복지의 증진에 대한 중복수혜 이의제기 가능성 존재

<표 Ⅴ-1> (가칭)문화균형교부세 제 · 개정 근거

내부 강점	내부 약점
- 문화시설 공급을 통해 국민의 문화여가 만족도 충족을 위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 -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기고려가 이루어져 형평한 시설 공급의 근거 설립 -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을 위한 문화균형발전지표의 개발 및 활용 근거로 사용 - 취약지역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부처의 평가 방안 및 근거 확립 - 법적근거에 의한 (가칭)문화균형특교세의 총액 결정	- 법령에 의하여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 부재 - 법령에 의한 지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부재 - 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 문화보급 및 향유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법에 의해 명시가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미비 - (가칭)문화균형교부세 운영 후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법령 부재 - (가칭)문화균형교부세 제정을 위한 사전적인

– 관련 산업의 고용 증대를 통한 정부 방침의 부합성 증대	노력 부재 – (가칭)문화균형교부세 관련법에 대한 총괄적인 법률정비 필요
외부 기회	외부 위협
– 삶의 질 및 행복도 증가에 미치는 문화의 중요도 증가 – 저출산 고령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시설 공급 및 향유 기회 제공 등의 유인 증대 – 지방자치 분권으로 인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 문화시설 공급으로 인한 주민 만족도 및 효용 증대 – 재원확충에 대한 필요성 제기 – 문화균형교부세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시설 공급 기회 직면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고용 및 소득 확대 –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시도지사에 의한 법적인 기본계획 수립 – (가칭)문화균형교부세를 활용하여 시설 공급 및 이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운영 및 자문기구에 대한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 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 문화가 산업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 공급	– 특별교부세 정책결정 기구와의 의견 높은 불일치 가능성 – 중앙행정기관간 사전 동의 필요 – 자치분권과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한 상호 미스매치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존재로 중복 수혜 논란 확대 가능성 – 구체적이지 않지만 포괄적인 문화도시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기제시 – 지자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기존 예산지원

2) 법령 제ㆍ개정 사항

(1) 문화시설 공급을 위한 관련법 제ㆍ개정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필요성 및 도입 근거

- (가칭)문화균형교부세 도입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기존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균특계정 지역자율계정 내 포괄보조사업(체육진흥시설지원,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포괄보조금과의 중첩성 배제 필요
- (가칭)문화균형교부세의 도입 근거를 기본계획 내 선제시하여 사전 제시하여 (가칭)문화균형교부세의 도입 이유 제시

<표 V-2> 필요성 및 도입 근거 항목

현행	개정	비고
문화기본법	12. (가칭)문화균형교부세 활	• 신설

제8조	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기본 계획 내 포함시켜 제시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내 교부세 방향 정립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7. 「문화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에서의 문화향유(시설 및 프로그램 등) 기회 제공을 위한 제반 업무	• 7호 신설 • 관할 지역의 범위에 대한 내용 추가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의 특별교부세 교부기준에 미비한 (가칭)문화균형교부세 도입의 교부기준 제시
- ❍ 경제순환, 생활서비스 만족, 행정기능 강화, 국가 행사 및 재정 우수 지역에 대한 교부 기준에 문화향유를 위한 시설 및 기회 제공에 대한 교부기준 개정
- ❍ (가칭)문화균형교부세의 교부안 기준 제시

<표 Ⅴ-3> 교부기준

현행	개정	비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	① 3. 법제9조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 시행령 제9조의2 ① 3. 개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9조의5(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확충, 관련 문화산업 강화 등을 위하여 문화균형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및 문화산업 현황, 투자소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 신설 • 지방교부세법 내 문화균형특별교부세 교부안 제시 • 기존 9조의5를 9조의6으로 변경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5(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균형특별교부세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7호에 따라 문화시설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 시행령 제10조의5항 신설 • 문화균형특별교부세 교부지역 및 대상사업 제시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균형특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분야: 문화시설(물적 시설 및 시설 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확충 및 시설운영관리 강화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평가 및 관리 전담기관 역할

❍ 소관부처의 (가칭)문화균형교부세 활용 사후 평가에 대한 역할을 제시하여 (가칭)문화균형교부세의 지속적인 관리 항목 추가

<표 V-4> 평가 및 관리 기관 항목

현행	개정	비고
문화기본법 제8조	13. (가칭)문화균형교부세 활용에 의한 기반시설 조성 등 시설 공급 기준을 제시하며, 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의 평가 관리에 의해 조정한다	• 신설 • 교부세 운영에 대한 기준 필요성 및 소관부처 운영 근거 제시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	9.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위탁된 전담기관에 의해서 (가칭)문화균형교부세의 사후 활용결과를 평가한다	• 신설 • 평가전담기관 명시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역할 및 활용 근거

❍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및 환경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선정 및 대상지역의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가칭)문화균형교부세의 역할 반영

❍ 기본 및 시행계획 내 (가칭)문화균형교부세 사용 목적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칭)문화균형교부세의 활용 및 용도를 제시

<표 V-5> 역할 및 활용 근거 항목

현행	개정	비고
지역문화진흥법 제2장 제9조	④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지속적인 시설 공급을 위해 (가칭)문화균형교부세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한다	• 신설 • (가칭)문화균형교부세의 활용 근거 제시
지역문화진흥법 제5장 제22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거주민의 문화향유 권리를 충족을 위해 (가칭)문화균형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다	• 신설 • 기금 보조 역할 제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	5. 문화환경 취약지역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가칭)문화균형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설 • 기본 및 시행계획 내 교부세 활용 근거 제시
문화예술진흥법 제6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6장 (가칭)문화균형교부세 활용 제16조(문화균형교부세 활용)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균형교부세를 활용한다 ② 문화균형교부세는 소관부처에 의해 운영 및 평가된다 제17조(문화균형교부세 용도) 1. 문화시설 공급 2. 국민의 문화복지 후생 증진 사업 3. 문화시설 지원 시설 설립 및 운영 4. 그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제7장 보칙	• (가칭)문화균형교부세 활용, 용도 신설 • 교부세 지원으로 인해 제6장 보칙을 제7장 보칙으로 수정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시설 지원 및 산업 연계

- (가칭)문화균형교부세 지원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발전정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칭)문화균형교부세 지원 가능 시설 및 산업과의 관계 제시
- 단일 문화시설 외 집적 문화시설에 대한 (가칭)문화균형교부세의 지원 범위 제시

<표 V-6> 시설 지원 및 산업 연계 항목

현행	개정	비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장 제26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은 (가칭)문화균형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수정 • 신설 • 문화산업단지에 대한 교부세 지원 가능성 명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 3	⑤ (가칭)문화균형교부세에 의하여 스포츠산업진흥지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 교부세 지원 근거 제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3. (가칭)문화균형교부세에 의해서 진흥시설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설 • 교부세 지원 범위 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가칭)문화균형교부세를 활용ᄒᆞᆫ 사업 발굴 및 보급에 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신설 •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교부세 역할 제시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지원 배분 기준

❍ (가칭)문화균형교부세 총액 결정 및 배분시 발생할 (가칭)문화균형교부세 산정 및 배분 방식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 제시

<표 V-7> 배분 기준 항목

현행	개정	비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장 제14조	③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문화균형교부세 배분 공식 설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신설 • 교부세 배분 공식에 대한 사전적인 협의 절차 제시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재원

❍ (가칭)문화균형교부세 재원 출처에 대한 항목 제시

<표 Ⅴ-8> 재원 항목

현행	개정	비고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②항의 6. 문화균형특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 신설 • 교부세 종류별 재원에 대한 해당 호 제시

(2) 1안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훈령 제·개정

□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령 제·개정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재원 및 교부기준 규정

❍ 관련 규정의 준용 명시

<표 Ⅴ-9> 지방교부세법 제·개정(안)

현행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2.23.>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12.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전문개정 2009.2.6.]	

	6. 문화균형특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신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5(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확충, 관련 문화산업 강화 등을 위하여 문화균형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및 문화산업 현황, 투자소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6―――――――――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 ――――――――――――――――

<표 Ⅴ-1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 ·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2.>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 ―――――――――――――――― ―――――――――――――――― ―――――――――――――――― ―――――――――――――――― ―――――――――――――――― ―――――――――――――――― ―――――――――――――――― ―――――――――――――――― ---------3. 법제9조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문화향유기회 확대,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 ―――――――――――――――― ――――――――――――――――

2017.7.26.> 1. 행정·재정 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2. 주민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교부세는 해당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0.]	-----------------
<신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5(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균형특별교부세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7호에 따라 문화시설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균형특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분야: 문화시설(물적 시설 및 시설 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확충 및 시설운영관리 강화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비중으로 한다. 1. 문화 및 체육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100분의 40 2. 시설 보강 노력: 100분의 40 3. 재정여건: 100분의 20 ④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문화균형특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교부절차, 교부방법,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훈령 개정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및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한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근거 마련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집행 및 집행의 확인 규정 설정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산정자료 제출, 교부절차, 교부방법 명시

❍ 신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0조의5)과 연계되는 문화향유 기본권 수요 증대를 위한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의 명시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과 집행의 확인 절차 확보

(3) 2안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법 제정

❍ 문화시설의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제시

❍ 문화시설 공급을 위한 교부금 종류, 재원 근거, 교부금 교부 근거 마련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교부율 보정 목적, 교부금 조정 근거 제시

❍ 문화시설 공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근거 제시

❍ 보통교부금의 보고 및 이의신청 근거 제시

<표 Ⅴ-11>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법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 및 문화시설 운영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문화시설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문화시설 운영 및 공급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문화시설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측정단위"란 지방문화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 양(量)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 국가는 문화시설 필요 인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문화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문화시설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문화시설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문화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문화행정 및 지방문화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문화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문화시설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도의 문화시설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의 문화시설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문화시설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문화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① 교부금이 산정자료의 착오 또는 거짓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되었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시ㆍ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개별소비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개별소비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문화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개별소비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문화시설 공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시설 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 문화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이외의 경비는 문화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문화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2.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

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문화시설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문화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문화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문화시설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 문화관련 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문화시설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공급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는 관할구역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문화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문화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ㆍ도의 문화시설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문체부 훈령 전문(안)

1) 법(안)의 주요내용

-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필요사항 규정
-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집행 및 집행의 확인 규정
-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산정자료 제출, 교부절차, 교부방법, 대상

사업의 명시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명시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집행의 확인 절차 제시

2)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훈령 전문(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5에 따른 문화균형특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조건이나 용도에 따라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문화균형특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른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산정에 필요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균형특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① 영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문화균형특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중점사업: 중요하고 시급한 문화시설(문화관련 시설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체육시설의 확충, 문화체육관리 및 강화 사업
2. 재량사업: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확충, 문화체육관리 및 강화 사업

② 시·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문화균형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영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은 문화 및 체육시설 보강 소요 금액, 문화관련 공무원수, 문화낙후도, 확충노력률, 개선

비율, 개선율, 적정사용률,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제8조(문화균형특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균형특별교부세가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경우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화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끝수계산) 문화균형특별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Ⅵ. 결론

1.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활용 절차
2.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 한계

1. 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활용 절차

1) 추진원칙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향

- ❍ 지역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여 문화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토대 구축
- ❍ 중앙에서의 일방적인 시설 지원 외에 지역사회에서 상향식으로 수렴된 문화 기회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에서의 문화관련 수요를 해결하는 기재로 활용
- ❍ 시설 공급으로 인한 문화시설 공급 목적 달성형이 아닌 지역에서의 문화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지역에서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 주민 수요 해결을 통한 지역 문화자원의 창출

-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을 통한 성공적인 문화시설 공급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시설 공급 외에 시설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
- ❍ 문화시설 공급은 단순 문화관련 시설을 공급하여 주민의 만족도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외에 지역에서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자원을 창출하는데 의의가 있음

□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다양성과의 접목

-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지원은 문화시설을 공급하는 것 외에 지역의 차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시설을 공급하는데 있음

ㅇ 더불어 차별적이지만 다양한 지역의 다양성과 접목하여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음

□ 민관 신뢰 및 협력 구축

ㅇ 문화시설의 공급은 주민수요를 반영한 사람중심의 사회적 가치 회복과 지역에서 발현된 수요 해결 형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

ㅇ 관에 의한 공급자와 이용자로서의 민은 공급에 의한 수요 역할 외에 공급된 시설을 개선 및 활용하는 주체 및 참여자의 역할 병행

ㅇ 더불어 민관에 의한 관계를 보다 생산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행정,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역할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

2) 추진주체간 역할

□ 중앙정부 역할

ㅇ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 시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 후 지원

ㅇ 주민 수요 및 지역 수요 반응형 법령 제정, 예산 지원, 운영 방식 설정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지방자치단체 역할

ㅇ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에서 실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장단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예산 계획 병행 제공

ㅇ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은 지역 주민의 문화만족도 향상 및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한 실천적인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조례 제정

□ 주민 역할

- 지역에서 공급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의 주민은 공급된 시설에 대한 이용자로서의 역할 외에 근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주인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시설 공급을 위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민 수요로 발현된 문화시설로 인해 문화향유 기회 제공 외에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
-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인한 문화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및 지속적인 문화시설 공급 유도를 위하여 주민 주도의 문화시설 관리 체계를 형성

3) 계획 및 지원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에 의한 문화시설 공급 기본계획

❍ 계획 성격 및 수립주체

- 문화시설 기본계획은 “국가가 문화시설을 공급하고, 지역 문화시설 지원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의 법정계획
- 국가가 지속적인 문화시설 공급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5년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 내 연도별 추진계획은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운영 성과를 평가 후 추가 지원 예산에 반영

❍ 계획 내용

- 문화시설 활성화 정책방향
- 문화시설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 문화시설 활성화 관련 계획 및 사업과 연계된 사항
-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그 밖에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

❍ 시행계획 수립

- 문체부 주관 하 문화시설 공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특정시기를 결정하여 문화시설공급활성화위원회에 제출

○ 타 계획 및 사업과의 관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공급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이와 연계하여 문화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사업의 총체적인 시너지와 효율성을 제고
- 기본적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하고 국가의 역할은 문화시설공급활성화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시설공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융합

□ 시 · 도계획 및 시 · 군 · 구계획

○ 시 · 도계획

- 시·도지사는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을 단위로 관할 시 · 도의 문화시설공급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

○ 시 · 군 · 구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시·군·자치구 문화시설공급활성화계획을 수립 · 시행

○ 주례의 제정

- 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 체계 수립

4)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적용

□ 문화시설 공급 사업 발굴

○ 문화시설 공급 사업이란 “지역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 환경적 목적을 추진하는 사업”을 지칭

- ❍ 시ㆍ군ㆍ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자치단체별로 설립 또는 지정한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문화시설 공급 사업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 문화시설 공급 대상사업(예시)
  - 지역의 자연·경관·역사·문화·전통·향토기술 등 자원을 활용한 물리적 시설
  - 지역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 만족도를 견인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의 문화자원 개선 및 보전 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문화시설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문화시설 공급의 반영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시·도 및 시·군·구 문화시설공급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반영 조치
- ❍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로 우선 반영

□ 문화시설 공급 사업에 대한 지원

-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 공급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화시설 공급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대부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5)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진단 지표 개발과 활용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지표의 개념과 의의

-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지표란 “지역의 문화시설 공급 현황 및 발전 잠재력을 진단하는 지표”를 말함
-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지표의 의의
  - 문화시설에 대한 체감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통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정부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활용
  - 문화시설 자원과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
  - 문화시설 공급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 및 정태적 실상과 동태적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진단지표의 활용을 통해 문화시설 공급의 활성화 추진 및 평가에 기여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진단지표의 작성체계

- ❍ 지표체계
  - 문화시설 현황지표 :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의 문화시설 현황 및 잠재력 파악 지표
  - 문화시설 활성화 지표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문화시설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 지표
-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지표는 4단계(①역량강화 단계, ②계획 단계, ③사업 · 협력 단계, ④성과창출 · 확산 단계)로 구분
- ❍ 지표의 작성은 읍면동 사무소의 주관으로 통리별 주민대표에게 조사표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취합결과를 공시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진단지표의 개발 및 활용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보급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진단지표의 활용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진단지표는 수요파악, 프로그램 창출, 교육 · 컨설팅, 시설 운영, 회계운영 등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지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진단지표는 문화시설 공급시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평가지표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진단지표를 문화시설 공급 기본계획 수립시 활용

6) 추진체계

(1) 문화시설공급활성화위원회

□ 위원회의 설치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시설공급활성화위원회 설치

○ 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 공급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시설 공급 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며, 부처의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 상호간 의견 조율

□ 위원회의 기능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의 기본방향 설정

○ 문화시설 공급사업의 추진전략 설정

○ 문화시설 공급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상호 연계의 조정

○ 그밖에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
  - – 당연직 위원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 위촉위원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조실장이 담당

□ 실무위원회의 구성

-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시설 공급 실무위원회를 설치
- ❍ 실무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 문화예술, 총무실 실국장 및 담당관
  -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시 · 도 및 시 · 군 · 구 위원회의 구성

- ❍ 시 · 도계획 및 시 · 군 · 구계획의 수립 · 변경과 그 밖에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 · 평가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문화시설공급활성화위원회를 두고, 시장 · 군수 · 구청장 소속으로 시 · 군 · 구 문화시설공급활성화위원회를 각각 설치
- ❍ 시 · 도 및 시 · 군 · 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고,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적으로 제정

(2) 문화시설공급중앙(지역)지원센터

❍ 설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공급 중앙(지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문화시설 공급 중앙지원센터는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 기존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지정하여 운영
- 문화시설 공급 지역지원센터는 별도의 기관 설치가 아닌 시도 소재 시도연구원을 활용하여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거나 필요시 신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기능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 진단지표의 개발 및 관리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문화시설 공급 사업의 운영·관리 지원
-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보급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 문화시설 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관리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문화시설 공급 중앙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문화시설 공급 지역지원센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7) 역량강화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시설공급자, 문화시설 사업과 관련된 공공·민간단체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상담 등을 지원
-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은 주민들 뿐 아니라 청소년, 여성, 민간단체 실무자 및 공무원 포함
  -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 청취 및 지역으로의 문화시설 공급을 위한 중앙의 의지를 상호 교류하여 지역이 원하는 문화가 발전하는 지역 창출과 문화 자원 역량 강화
  - 교육 대상과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문체부는 전반적인 문화시설 공급을 위한 교육방안을 기획하여 문화시설 공급 중앙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추진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현장밀착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단계, 모델 유형에 적합한 내용을 개발, 제시하여 현장 실무적인 컨설팅을 제공
  - 교육주체에 따라 중앙교육과 자치단체별 교육으로 이원화하여 진행
  - 교육방식은 강의식 교육, 토론식 교육, 패널토론,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현장실습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
- ❍ 주민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의 양성
  - 주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진을 광범위하게 육성해야 함
  - 주민교육을 담당할 마을주민을 강사로 육성하기 위해서 주민교육과정에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교육할 수 있도록 강사를 교육
  - 마을에 필요한 교육컨텐츠는 공동체 교육, 전문분야 교육, 실무교육으

로 구분

□ 문화시설 지킴이 양성

- ❍ 문화시설 지킴이란 효율적인 문화시설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의 수요 발현 문화시설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현장의 문화시설 리더를 지칭
  - 문화시설 공급은 지역에 최적화된 시설을 national minimum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공급 외에 공급 예정 또는 기 공급된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
  - 기 공급된 문화시설에 대한 관리는 신규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것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 공급 사업을 주도하는 문화시설 지킴이 양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
  - 문화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문화시설 지킴이 발굴을 위한 지역의 인적자원을 조사
  - 지역의 고령화 현황을 반영하고,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 부합하는 고령계층을 활용한 문화시설 현장 관리 인원 확보
  - 특히 청년과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문화시설 지킴이에 대한 단계별 교육 실시로 지역의 핵심인재로 육성
  - 문화시설 지킴이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상자 수준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하되 문화시설의 양적 및 질적 공급에 필요한 전문적인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
- ❍ 문화시설 공급 중앙·지역 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에 문화시설 지킴이 양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 위탁

2.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 한계

1) 문화관련 특별교부세 도입의 효율성 문제

❍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재원이전이 지방의 재정운용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지원에서 유발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및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시설 공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과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두 비용을 일치시키려는 제도적 노력 필요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핵심적 정책목표는 지역간 문화시설 공급에 대한 타당성, 시급성, 재정여건,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의 이용자가 충족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충당하는 재정지원 형태임
- 반면, 이러한 형태의 지원은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문화시설 공급에 대한 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재정운영을 보다 방만하게 할 동기를 내포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의 경우 배분을 위한 공식 설정을 통해 교부세 지원 전에 운영에 대한 사전적인 운영 방침을 제시하지만, 특별교부세의 경우 해당 부처의 재량에 의하여 배분 및 공식이 결정되어 효율적인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집행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 동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점검 항목 및 절차가 필요

❍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문화시설 공급의 양적 및 질적인 측면의 보완의 선순환 고려 필요

- 중앙에 대한 재정적 예속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재정 운용 동기가 필요
- 공공재로서의 문화시설에 대한 인식 강화로 인하여 시설의 질적 저하를 상쇄시키는 부처의 역할 필요

❍ 현재 고려되고 있는 문화시설 공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목적 재고 필요

-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한 이전재원 확보는 시설의 공급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됨
- 반면, 문화시설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익 증가 유인 부족 및 소관 부처의 적합한 재원 사용에 대한 원칙이 필요

❍ 따라서, 효율적인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지원을 위해서는 포괄보조와 같은 교부 공식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지역에서의 문화시설 수요에 대한 사전적인 시설 평가를 통한 지역에서의 수요 파악이 선행되는 절차 필요
- 문화시설 공급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제도 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배분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산정공식 설정 필요

2) 문화관련 특별교부세 도입의 투명성 문제

❍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시설 공급에 대한 예산 배분 규모 및 내역의 상세한 정보 제시 필요

- 지방자치단체내 관련 예산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신설 예정인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형평한 지역별 배분 필요

❍ 엄격한 배분기준과 함께 사후 자치단체별 배정내역과 사유를 전면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 현재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 세부배부내용을 조정하고 집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치를 반영
- 따라서, 현재 특별교부세의 잔여 재원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교부세 인센티브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
- 이를 통해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경우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분담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원의 일부를 징수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방안 고려 필요

3) 문화관련 특별교부세 도입의 방향성 문제

- ❍ 지방재정 관련 정책대응의 핵심적 가치인 중앙–지방관계의 개선 필요
  - – 중앙–지방관계의 개선은 중앙–지방 간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고려한 정책대응 방향 설정 필요
  - – 문화시설에 대한 공급은 국민이 누려야할 문화향유에 대한 기본권과 관련되어 기존 중앙–지방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①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재원의 용처를 결정하는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는 우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화되는 우려의 문제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
  - – 따라서,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는 문화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 ❍ 전통적인 지역구분의 재고려를 통한 지원 기준 마련
  - – 특별교부세 산정을 위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되, 모든 지역간의 격차를 반영한 문화시설 공급이 아닌 지역간 격차를 반영한 문화시설 공급 기준 설정 필요
  - – 수도권–비수도권, 시·도–시·군·구, 중앙–지방, 특·광역시–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떠나 국민 문화기본권 확보라는 대전제 확보 필요

4) 문화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적정성 문제

- ❍ 특별교부세 지원결정에 대한 과도한 재량부여 방지
  - – 특별교부세는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를 복구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③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또는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

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 특별교부세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방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지만, 특별교부세의 교부사항 또는 교부조건에 대한 교부권자의 교부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의견 팽배할 수 있어 적절한 교부기준 설정 필요

<표 Ⅵ-1> 특별교부세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산정항목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마.문화예술 및 체육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사업 중 타지역과의 격차가 현격하게 커 문화향유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문예회관,예술회관,도서관 등 문화예술사업 ② 공공체육시설,체육공원 등 체육사업 ③ 문화 산업 및 컨텐츠 사업

○ 현행 균특회계와의 유사중복성 탈피

-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는 기존 균특회계의 부처별 지원방식과 중복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박물관, 문예회관, 체육진흥시설 등에 대한 시설 확충 기준과 중첩되어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원대상에 대한 차별적인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

○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

- 기존 특별교부세의 교부 방식이 지역의 낙후성 및 재원 부족으로 인한 보조 역할로 한정
- 반면, 문화시설에 대한 낙후성은 기존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급 기준으로 낙후성을 고려하는 것은 부족
- 따라서, 상대적인 낙후지역에 상반되는 상대적인 우수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상대적인 우수지역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시설 공급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 형성 기점으로 선정 및 지원함으로써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Next Cultural Environment의 미래상을 동시간대에 타지역에서 제시하는 역할 수행

5) 문화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지속가능성 문제

❍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가속화로 인한 교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 외환위기 이후 장기 동향 기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세는 하락하였지만, 재정자립도의 하락으로 주요 시설에 대한 중앙 의존도는 심화되는 추세
- 이는 세입확대를 위한 세원 증가가 재정수요 증가에 못 미치는 지방세의 구조적 한계이기도 하지만 재정수요 증가를 통해 국민수요 반영, 복지확대, 양극화 등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상의 문제로 판단할 수 있음
- 특별교부세 교부를 통한 이전재원의 확보는 중앙의 문제임과 동시에 지방의 문제임을 직시할 필요 존재
- 따라서, 중앙에 의한 지원 외에 이를 매칭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문화시설 공급을 통해 문화에 대한 국민 수요를 반응한다는 측면 외에 문화시설 공급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이지대 및 지역에 대한 문화의 보급화 필요
- 즉, 문화시설에 대한 점적인 공급이 아닌 지역에서의 문화 발전을 위한 면적인 발전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이를 위해 지역에서의 문화시설 활용 효율성 및 경제성확보를 위해 지역의 산업 기반 및 부가적인 시장 확보를 통한 문화기반 확충 및 인식 개선 필요

❍ 인구변화를 고려한 (가칭)문화균형특별교부세 교부 기준 설정

- 광역시와 광역도 기준 2010년 두 지역의 기대수명은 거의 같으나, 2010년 대비 2040년 광역시의 기대수명이 80.3세에서 86.1세로 7.3% 증가하고, 광역도의 경우 광역시보다 약간 낮은 80.3세에서 86.6세로 7.7%의 증가
- 2010년 대비 2040년 기대수명의 일반 증가율은 7.5%로, 광역도의 경우 일반 증가율보다 높으며 광역시의 경우 일반 증가율보다 낮음
- 노년 인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까지 386.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자별 특성 및 생애주기별 문화시설 공급 기준 설정 필요

❍ 특별교부세 교부 배정을 위한 자치단체장 역할 축소

- 자치단체장이 되는가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받는 특별교부세가 달라지는 특성 배제 필요
- 특히, 단체장의 정치·행정적 지식, 경험, 영향력 외에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함으로써 선심성 시설 공급을 통한 시설의 질적 낙후도를 사전 배제하는 노력 필요

참고문헌

국민안전처(2017),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해설

국회예산정책처(2018a), 2018 경제재정수첩

국회예산정책처(2018b), 대한민국 재정 2018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여가 행복지수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승규, 이제연(2017), 인구변화에 대비한 지역발전정책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조정래(2014), 특별교부세 배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장치단체장 특성을 중심으로, 정부학 연구, 20(3) : 247-278

양혜원(2011), 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 연구

양혜원(2013), 문화재정과 삶의 질 간의 관계 연구, 문화정책논총 27(1) : 9-29

한국재정법학회(2011),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朱德 (2003). 프랑스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분권. 낙동강연구, (83) : 52-62.

Brudney, J. L. and R. E. England (1982), Urban Policy Making and Subjective Service Evaluation : Are They Compatibl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2(2) : 127-135.

Christensen, T. and P. Laegreid (2005), Trust in Government: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Satisfaction, Political Factors, and Demography,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8(4) : 487-511.

Easterlin, R. A.(2002). “Building a Better Theory of Well-Being”. in L. Bruni and P. L. Porta(eds.) Economics and Happines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Englehart, Ronald.(1996). “The Diminishing Utility of Economic Growth. Critical Review 10(4).

Galloway Susan.(2005). ″A Literature Review″. in Scottish Executive Social Research.(2005).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Measuring the benefits of Culture and Sport.

Liao T. F, (1994), Interpreting probability models: logit, probit, and other generalized linear models,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101, Sage Publication.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 s″.

Van Ryzin, G. G. (2004), The Measurement of Overall Citizen Satisfaction,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7(3) : 9-28.

Walker, A. and Maeson, L. van der. eds. (2003).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Kluwer.